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2013년
축산·수산 사업계획

忠淸北道

= 목 차 =

□ 2013 축산·수산시책 기본방향 ····· 5
□ 2013 주요사업 투자계획 ····· 7
□ 분야별 사업계획 ····· 11

Ⅰ 축산정책팀

1. 청풍명월한우 일류 브랜드 육성 ····· 13
2.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지원 ····· 23
3. 송아지생산 안정제 ····· 31
4. 가축시장(우시장) 현대화 ····· 35
5. 축사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 ····· 40
6. 육우 거세시술료 지원 ····· 43
7. 유우군 능력검정개량 지원 ····· 53
8. 낙농헬퍼(도우미)지원 ····· 62
9. 젖소농가 첨단발정탐지기 보급 ····· 70
10. 축사지붕 태양광시설 설치 ····· 76
11.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83
12.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 86
13. 가축계열화 ····· 90
14.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공급 ····· 95
15. 축사(양계,오리)친환경에너지 효율화 ····· 104
16. 양봉화분사료공급 ····· 111
17. 꿀벌 벌집(벌통, 소초광 등)지원 ····· 119
18. 가축재해보험 ····· 126
19.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 ····· 136
20. 한우고급육 경진대회 ····· 142
21. 학교우유급식 ····· 148

Ⅱ 친환경축산팀

1.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 153
2.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보급 ····· 172
3. 개 사육농장 환경개선 ····· 178
4. 계(鷄)사 축분처리장비 보급 ····· 183
5.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188
6.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 201
7. 볏짚곤포 네트 지원 ····· 210
8.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 216
9. 사료조 방수(코팅)시설 설치지원 ····· 220
10.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 226
11. 축산경영 정보지 보급 ····· 230
12. 가축생균제 지원 ····· 234
13.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 ····· 240
14.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육성 ····· 247

Ⅲ 축산물위생팀

1. 쇠고기이력제 지원 ····· 257
2. 축산종합지도(HACCP)사업 ····· 265
3. 폐사된 소 처리 지원 ····· 285
4. 충북 축산물브랜드전 개최 ····· 289
5. 전국 축산물페스티벌 참가지원 ····· 291
6.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비예산) ····· 292
7. 낙농치즈공장 및 체험관 건립 ····· 297

Ⅳ 동 물 방 역 팀

1.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 307
2.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 ····· 310
3.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 313
4. 살처분보상금 지원 ····· 321
5.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신규) ····· 325
6. 거점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신규) ····· 329
7.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331
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지원 ····· 344
9. 소독약품 등 구입 ····· 346
10.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 350
11.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신규) ····· 354
12.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 358
13. 돼지유행성 설사병 경구용 예방백신 지원 ····· 368
14. 닭 전염성F낭병 예방백신 지원 ····· 372
15. 종계 종합백신 지원 ····· 376
16. 조류인플루엔자 면역증강제 지원 ····· 380
17.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 385
18.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 ····· 390
19.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방제지원 ····· 396
20. 충북수의사회 50주년 및 전국수의학술대회 지원 ····· 400
21. 시군 방역시책 평가 ····· 408
22. 가축전염병 신고포상금 지원 ····· 410
23. 동물약품 수거검사 및 동물용의약품 전문판매업소 점검 ····· 413
24. 축산위생연구소 방역사업 강화 ····· 414

V 수 산 팀

1.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 419
2. 자율관리어업 육성 ····· 423
3. 수산 종묘매입 방류 ····· 429
4. 낚시터 환경개선 ····· 434
5. 어로어업인 안전조업 기반조성 ····· 443
6. 도지사배 전국 민물낚시대회 ····· 449
7.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대량생산 방류 ····· 451
8.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 458
9.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원 ····· 464
10.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장비지원 ····· 468
11.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지원 ····· 474
12. 미꾸라지 종묘 보급 ····· 481
13. 어촌체험마을 조성 ····· 486
14.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 ····· 491
15.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 495

※ 별첨 : 수산분야 사업관련 공통서식 ····· 499

참고자료 ····· 515

농림수산식품부 정책방향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체질개선·미래준비

- 농수산물 생산시스템 선진화
- R&D 지원 및 성장동력 확충
- 수산업 체질개선
- 식품산업육성 및 수출 확대

활력창출·생활안정

-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인력육성·유입·지원 체계화
- 생활안정 및 지역개발 지원
- 투자 활성화

소득안정·위험관리

- 농어가 소득·경영안정 지원
- 동물질병 및 자연재해 대응 강화
- FTA/DDA 대응 강화

안전식품·안정공급

-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협동조합 개혁 및 유통구조 개선
- 안정적인 식량공급
- 기후변화 대응 강화

충청북도 축·수산 정책방향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안전성 도모

여 건

◇ 한·미, 한·EU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수입축산물과 차별화를 위한 일류 축산물브랜드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요구

◇ 친환경, 고품질, 안전한 축산물을 찾는 소비자 패턴변화와 재난성 질병 다발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축산 확산 필요

◇ 가뭄, 폭염 등 전세계 기상이변으로 곡물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자급대책 요구

◇ 토종어종 생산기반 확충 및 내수면어업 관광 자원화

➡ **시장개방 대비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

이 행 과 제

1 시장개방을 극복하는 축산업 육성

2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3 가축방역체계 구축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

4 경쟁력 있는 내수면어업 육성

2013년 주요사업 투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 담
합 계	**81개사업**	**68,833**	**17,006**	**9,056.9**	**22,070.1**	**6,809**	**13,891**
Ⅰ. 축산정책팀 소관	**21개사업**	14,093.5	2,216	1,568.4	4,169.1	2,834	3,306
•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육성	27,000두	400		120	280		
•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지원	27,000두	400		120	280		
• 송아지 생산안정제	15,000두	300		45	105		150
• 가축시장(우시장) 현대화 사업	1개소	400		60	140	200	
• 축사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	113호	337.5		81	121.5	135	
• 육우 거세시술료 지원	9,000두	180		54	126		
•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지원	6,300두	315		94.5	220.5		
• 낙농헬퍼(도우미) 지원	800일	120		25.2	58.8	36	
• 젖소농가 첨단 발정탐지기 보급	100호	600		90	210	300	
• 축사지붕 태양광시설 설치	12개소	408		73.5	171.5	163	
• 축사시설 현대화		0					
• 말 산업 육성 지원		0					
• 가축계열화		3,000				2,000	1,000
•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공급	60,000두	900		90	360		450
• 축사(양계,오리)친환경에너지 효율화	25호	700		105	245		350
• 양봉화분사료공급	200톤	1,400		140	560		700
• 꿀벌 벌집(벌통, 소초광) 지원	35,000군	700		70	280		350
• 가축재해보험	300호	1,200	600	60	240		300
• 축사시설 전기 안전진단	300호	30		7.2	16.8		6
• 한우고급육 경진대회	1회	10		10			
• 학교우유급식	28,351명	2,693	1,616	323	754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 담
Ⅱ. 친환경축산팀 소관	**14개사업**	31,421	5,073	4,205	10,811	3,975	7,357
• 가축분뇨처리사업	4종	5,145	1,503	209	1,501	1,575	357
• 가축분뇨처리스키드로다 보급	30대	600		90	210		300
• 개사육(육견)농장 환경개선	335호	221		22	88		111
• 계사 축분 처리 장비	2대	108		32	76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4종	17,220	3,570	2,224	5,189	2,400	3,837
•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2,017ha	1,931		579	1,352		
• 볏짚곤포 네트지원	2,000롤	400		60	140		200
•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5개소	1,500		270	630		600
• 사료조 방수시설 설치 지원	50개소	100		100			
•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2개소	380		68	160		152
• 축산경영 정보지 보급	500부	36		7	29		
• 가축생균제지원	500호	1,000		100	400		500
•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	650호	2,600		390	910		1,300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육성	200호	180		54	126		
Ⅲ. 축산물위생팀 소관	**8개사업**	3,516	1,618	961	529	0	408
• 쇠고기 이력제 지원	79,400두	738	369	111	258		
• 축산종합지도(HACCP)사업	70개소	559	224	50	117		168
• 폐사된 소 처리 지원	1,000두	220		66	154		
• 충북 축산물 브랜드전 개최	1회	40		40			
• 전국 축산물 페스티벌 참가	1회	27		27			
• 낙농치즈공장 및 체험관건립 사업	2개소	1,200	600	360			240
• 충북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도)	2회	24		24			
• 도축검사원인건비	20명	708	425	283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 담
Ⅳ. 동물방역팀 소관	**22개사업**	**15,548**	**6,233**	**1,443**	**5,578**		**2,294**
•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94,166천건	5,995	2,751		1570		1,674
•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	92,900두	650	195		455		
• 돼지소모성질환컨설팅 지원	10호	100	30		30		40
• 살처분 보상금 지원		2,500	2,000		500		
•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3,465대	204	102	102			
• 거점 동물보호센터 건립지원	1개소	1,000	300	210	490		
•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5개반	983	491	48	444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지원	15명	590	354	236			
• 소독약품 등 구입	32톤	400		120	280		
•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	800천두	264		79	185		
•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236천두	708		212	496		
• 젖소번식장애컨설팅 지원	20천두	200		36	84		80
• 돼지유행성설사병 경구용 예방백신 지원	50천두	150		45	105		
• 닭전염성 F낭병 예방백신 지원	16,000천수	160		48	112		
• 종계 종합백신 지원	490천수	103		31	72		
• 조류인플루엔자 면역증강제 지원	120톤	600		90	210		300
•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100호	400		60	140		200
• 공수의사 방역 활동비 지원	50명	420		84	336		
•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방제지원	66천군	99		30	69		
• 충북수의사회 50주년 전국수의학술대회	1회	10		10			
• 가축전염병 신고포상금 지원		10	10				
• 동물용의약품 수거 비용		2		2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 담
V. 수산팀 소관	**16개사업**	**4,254.5**	**1,866**	**879.5**	**983**	**0**	**526**
•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3,289㎡	312	250	19	43		
• 자율관리어업 육성	6개소	350	175	42	98		35
• 수산종묘매입 방류	1,000천미	350	280	35	35		
• 낚시터 환경개선	2종	137	137				
• 어로어업인 안전조업 기반조성	30척	150		18	72		60
• 도지사배 전국 민물낚시대회	1회	31		10	15		6
•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대량생산 방류	8개소	200		40	160		
•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46,875kg	150		30	120		
•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원	206명	16.5		3.3	13.2		
•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장비지원	100개소	100		16	64		20
•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 지원	290천미	100		40	60		
• 미꾸라지 종묘 보급	30개소	150		15	90		45
• 어촌체험 마을 조성	1개소	500	350	75	75		
•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	2개소	900	270	135	135		360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1개소	800	400	400			
• 내수면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	3개소	8	4	1.2	2.8		

축산정책팀

1.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정책	엄주광	행)3713 일)220-371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화를 위한 경제형질이 우수한 한우암소 계통조성

○ 혈통등록, 계획교배, 거세시술을 통하여 체계적인 한우개량 및 고급육 생산

2. 근거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청풍명월한우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브랜드육의 품질을 높여 수요 창출을 통한 한우 판매두수 확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청풍명월한우 광역 브랜드 판매두수(두)	2,220	2,040	2,100	2,160	'13. 2월	청풍명월한우 판매두수 (청풍명월한우클러스터 보고)

4. 2013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혈통등록	인공수정료 (정액대)	거세시술료
사 업 량(두)		27,000	10,000	8,500	8,500
사업비	합 계	400,000	60,000	170,000	170,000
	도 비(30%)	120,000	18,000	51,000	51,000
	시군비(70%)	280,000	42,000	119,000	119,0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 청풍명월한우 광역브랜드 참여축협(단체) 및 참여농가

○ 시군단위 브랜드 추진 축협(단체) 참여농가

- 제천(황초와우), 보은(황토조랑우랑) 등

○ 충북한우협동조합(청풍순한우) 참여농가

○ 단양군은 암소개량협의회 참여농가

2. 사업주관 : 시장·군수

○ 협조단체 : 지역축협, 충북한우협동조합, 한국종축개량협회

3. 사업기간 : 2013. 1 ~ 12

4. 지원사업의 내용

○ 혈통등록 : 기초, 혈통, 고등 등록우의 등록비 지원

○ 인공수정료(정액대) : 인공수정 시술료 또는 정액대 구입비용 지원

○ 거세시술료 : 수소 거세 시술 비용 지원

※ 상기 지원대상 중 직접 개량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단체에 속한 사업대상농가가 관할축협에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5. 지원 우선순위

① '08~'12년 초음파생체단층촬영 결과 우량암소 선발 농가

② 한우암소 개량협의회 참여 농가

③ 청풍명월한우 광역브랜드 참여 농가

④ 시군단위 브랜드 추진축협 참여 농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세부사업명	지원 내용	한도액(두)	지원한도
혈통등록료	기초, 혈통, 고등등록료	8,000원	· 기초등록 : 4천원/두 · 혈통등록 : 6천원/두 · 고등등록 : 8천원/두
인공수정료	인공수정 시술료 또는 정액대 구입	20,000원	· 인공수정료 : 20천원/두 · 한우정액 : 10천원/1스트로
거세시술료	수소 거세 시술료	20,000원	

※ 지원 단가 이내 실비 지원

7. 사업신청

○ 청풍명월한우 : 해당축협(충주한우협회)에서 희망농가의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시군에 일괄 신청

○ 시군단위 브랜드 : 브랜드추진 축협에서 희망농가의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시군에 일괄 신청

8. 세부사업 추진요령

<혈통 등록>

1) 등록대상우 및 등록기준

○ 등록대상우 : 광역 및 지역브랜드 참여 농가의 한우 암소

○ 등록기준 :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등록규정, 가축외모심사기준

2) 등록단계별 대상우

○ 기초등록 : 6개월령 이상으로 외모심사점수 암소 70점, 수소 75점 이상인 한우

○ 혈통등록 : 기초등록 이상의 암소가 인공수정으로 생산된 2개월령 이전에 등록 신청한 송아지

○ 고등등록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암소는 고등등록을 할 수 있다.

① 혈통등록우로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내에서 외모심사 결과 75점 이상인 것

② 번식능력이 양호하고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

※ 혈통, 고등등록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사업비 발생시 기초등록 지원

※ 혈통등록은 암, 수 중 어느 한 성비가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추진체계

농 가	→ 신청	지역축협 한우조합	→ 취합신청	종축개량협회 (등록처리)

※ 등록일정은 시군 실정에 맞게 축협 및 종축개량협회와 협의하여 집행

<인공수정료(정액대)>

○ 대 상 : 광역 및 시군단위 브랜드 참여농가 가임암소

- 인공수정 시술료 : 암소 두당 년 1회로 하며 보조금 청구시 인공수정증명서 확인후 집행
- 정액대 : 자가인공수정시 정액대(가임암소 1두당 2스트로) 구입 실비 지원

<거세시술료>

○ 지원대상 : 한우송아지 거세 농가로 20개월이상 비육 가능 농가

○ 지원요건 : 조기거세(6개월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거세시 8개월까지 인정

9. 사업비 집행과 정산

○ 사업실적 확인

- 혈통등록료 :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시군별 한우등록 실적
- 인공수정료 :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발행한 인공수정증명서 또는 자가인공수정 확인서(정액구입 영수증 첨부)
- 거세시술료 : 거세시 공무원 입회 및 거세확인서 서명 날인 (유혈거세만 인정)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혈통등록, 인공수정, 거세시술을 한 경우 '13년 사업상자로 적격하면 사업대상자로 선정후 사업비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관련 증빙자료를 징구 확인하여 사업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집행

○ 사업단가가 지원단비에 미달될 경우에는 미달가격에 보조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초과시 초과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

10.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역축협 및 한우조합, 농가에 사업안내 홍보 실시

○ 시군에서는 연간 2회이상 세부사업별 지원실태를 점검하여 부정 지급사례를 사전 방지하고, 위반사례 발견시 지원금액을 회수하고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본 사업이 시군 자체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도 사업을 우선 시행

○ 당초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장·군수는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 후 도 및 사업수행기관에 통보

○ 시군 및 지역축협에서는 시군단위 브랜드 농가가 생산한 송아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광역브랜드 참여농가에게 우선 판매하도록 알선 지도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 고 일	서 식
○ 사업신청서	희망자 → 축협 ↳ 시·군	2013. 1. 31	서식 1호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시·군 → 도	2013. 2. 15	서식 2호
○ 사업 추진완료 및 정산보고	시·군 → 도	사업종료후 : 20일이내	서식 4호

별첨 1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두, 천원)

시군별	합 계				지원 내역					
	사업량	사 업 비			혈통등록료		인공수정료		거세시술료	
		계	도비	시군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27,000**	**400,000**	**120,000**	**280,000**	**10,000**	**60,000**	**8,500**	**170,000**	**8,500**	**170,000**
청주	443	7,292	2,188	5,104	112	672	164	3,280	167	3,340
충주	4,005	58,484	17,545	40,939	1,544	9,264	1,083	21,660	1,378	27,560
제천	2,469	37,522	11,257	26,265	847	5,082	724	14,480	898	17,960
청원	4,625	78,962	23,689	55,273	967	5,802	1,833	36,660	1,825	36,500
보은	4,566	60,856	18,256	42,600	2,176	13,056	1,137	22,740	1,253	25,060
옥천	2,021	31,460	9,438	22,022	640	3,840	874	17,480	507	10,140
영동	864	14,760	4,428	10,332	180	1,080	420	8,400	264	5,280
증평	796	8,458	2,537	5,921	533	3,198	203	4,060	60	1,200
진천	1,413	17,942	5,383	12,559	737	4,422	431	8,620	245	4,900
괴산	2,379	33,076	9,923	23,153	1,036	6,216	709	14,180	634	12,680
음성	2,894	43,950	13,185	30,765	995	5,970	722	14,440	1,177	23,540
단양	525	7,238	2,171	5,067	233	1,398	200	4,000	92	1,840

서식 1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사업 신청서

□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집)　　(핸드폰)

□ 사육두수

총두수	번식우	비육우	육성우 및 송아지

□ 브랜드 가입현황

브랜드 명칭	브랜드사업주체 (주관단체명)	가입 년월일	가입두수

□ 사업신청 내역

계	혈통등록	인공수정	거세시술
두	두	두	두

위와 같이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에 참여코자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시·군>

(단위 : 호, 두, 천원)

구 분	호 수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혈통등록						
인공수정						
거세시술						

서식 3

사업추진 완료 및 정산 보고

< 시·군>

(단위 : 호, 두, 천원)

세부 사업	계 획					실 적					도비 집행 잔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호 수	두 수	계	도비	시군비	호 수	두 수	계	도비	시군비	
계											
혈통등록											
인공수정											
거세시술											

※ A4횡으로 작성 제출

※ 혈통등록 실적 : 두(기초 , 혈통 , 고등)

서식 4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월분)

연번	수정일자	바코드번호 (9자리)	KPN 정액번호	축주			보조금 (원)	농가 자필 서명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계								

○ 상호명 : 수정사(수의사) 성명 : (인)

○ 소재지 :

○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 면허번호 :

○ 계좌번호 및 예금주 :

붙임 : 한우인공수정 증명서 부.

2013. .

○○시장·군수 귀하

서식 5

자가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신청서(○월분)

년월일	정액구입량		자가인공수정실적			
	수량	금액	바코드번호	정액번호 (KPN)	정액단가	지 원 신청액
계						

상기와 같이 자가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정액대를 신청합니다

2013. . .

계좌번호 :

농가주소 :

성 명 : (서명)

※ 붙임 : 한우정액공급 확인서 사본(농협정액판매팀 발급)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6

한우거세 확인서

□ 농가개요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집)　　휴대폰)

□ 거세내역

연번	바코드번호	개월령	거세방법	보조금 지급액(원)	거세일자
계					

※ 보조금 지급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상기와 같이 거세를 하였기 확인합니다.

2013.　　.　　.

농가명 :　　(서명)

확인자(공무원) : 소속　　직급　　성　명 :　　(서명)

○○시장·군수 귀하

2.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정책	엄주광	행)3713 일)220-371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인공수정 정액대 인상으로 인한 소규모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 암소의 가계혈통과 유전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증 종모우 정액 선택으로 체계적인 육종가 개량 유도

2. 근거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체계적인 혈통관리를 통한 근친교배 방지 및 불량 유전형질 제거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송아지 등록률(%)	68.1	67.2	67.5	67.8	'13. 2월	종축개량협회 혈통등록 실적

4. 2012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혈통등록	인공수정
사 업 량(두)		27,000	10,000	17,000
사업비	합 계	400,000	60,000	340,000
	도 비(30%)	120,000	18,000	102,000
	시군비(70%)	280,000	42,000	238,0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 브랜드 미참여 30두미만 한우암소 농가

2. 사업주관 : 시장·군수

○ 협조단체 : 지역축협, 한국종축개량협회

3. 사업기간 : 2013. 1 ~ 12

4. 지원사업의 내용

○ 혈통등록료 및 인공수정료(정액대) 실소요비 지원

5. 지원 우선순위

① 1순위 : 광역 및 지역브랜드 미참여 한우 암소 10두미만 사육농가
② 2순위 : 광역 및 지역브랜드 미참여 한우 암소 30두미만 사육농가
③ 3순위 : 한우 암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세부사업명	지원 내용	한도액(두)	비 고
혈통등록	기초·혈통·고등 등록료	8,000원	· 기초등록 : 4천원/두 · 혈통등록 : 6천원/두 · 고등등록 : 8천원/두
인공 수정	인공수정료, 정액대(2회/1두)	20,000원	· 인공수정료 : 20천원/두 · 한우정액 : 10천원/1스트로

※ 지원 단가 이내 실비 지원

7. 사업신청

○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을 통하여 시군에 신청

8. 세부사업 추진요령

<인공수정>

○ 보조금 지급 대상자 : 당해 한우암소를 인공수정한 개업중인 가축인공수정사 및 수의사, 자가 인공수정 한우농가

○ 정액선택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의 보증종모우 정액

○ 지원조건

- 암소 1두 대하여 1회만 지원(수정실패로 인한 재수정시 미지원)
  (단, 연초에 수정료가 지급되고 송아지 생산이후 연말에 수정시 수정료 지급)
- 자가인공수정의 경우 두당 2스트로 구입비 지원

○ 추진절차

① 가축인공수정사(수의사)는 인공수정한 후『한우 인공수정료 지급신청서<서식41〉』를 매분기말 10일까지 관할 시·군청에 제출

② 한우 자가인공수정 농가는 『한우 자가 인공수정 정액대금 지원신청서<서식 5>』를 시군청에 매분기말 10일까지 신청

③ 시·군에서는 신청된 서류 및 각종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가축 인공수정사 및 수의사, 자가인공수정농가에 보조금 지급

○ 인공수정시 준수사항

- 인공수정사 및 자가수정 농가는 지정종모우 정액으로 인공 수정하되 근친을 피할 수 있는 씨수소 정액을 선택사용(종개협, 시군별 추천정액 사용)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종모우 근친여부 확인 가능

<혈통등록>

1) 등록기준

○ 등록기준 :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등록규정, 가축외모심사기준

2) 등록단계별 대상우

○ 기초등록 : 6개월령 이상으로 외모심사점수 암소 70점, 수소 75점 이상인 한우

○ 혈통등록 : 기초등록 이상의 암소가 인공수정으로 생산된 2개월령 이전에 등록 신청한 송아지

○ 고등등록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암소는 고등등록을 할 수 있다.

① 혈통등록우로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내에서 외모심사 결과 75점 이상인 것

② 번식능력이 양호하고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

※ 혈통, 고등등록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사업비 발생시 기초등록 지원

○ 추진체계

농 가	→ 신청	지역축협 한우조합	→ 취합신청	종축개량협회 (등록처리)

※ 등록은 시군 실정에 맞게 축협 및 종축개량협회와 협의하여 집행

9. 사업비 집행과 정산

○ 사업실적 확인

- 인공수정 : 인공수정증명서(KPN번호 및 스트로 첨부 확인)
- 혈통등록 :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시군별 한우등록 현황

○ 시장·군수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사업비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인공수정 및 혈통등록을 한 경우 시군에서 '13년 사업대상자로 적격하면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비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관련 증빙자료를 징구 확인하여 사업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집행하고 사업추진 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단가가 지원단비에 미달될 경우에는 미달가격에 보조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초과시 초과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

10.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매 분기별 지원 실태를 점검하여 부정 지급 사례를 사전 방지하고, 위반사례 발견시 지원금액을 회수함과 아울러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 고 일	서 식
사업신청서	희망자 → 축협 ↳ 시·군	2013. 1. 31	서식 1호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시·군 → 도	2013. 2. 15	서식 2호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시·군 → 도	사업종료후 : 20일이내	서식 3호

별첨 1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두, 천원)

시군별	합 계				세부사업 내역			
	사업량	사 업 비			혈통등록		인공수정	
		계	도비	시군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27,000**	**400,000**	**120,000**	**280,000**	**10,000**	**60,000**	**17,000**	**340,000**
청주	452	7,472	2,242	5,230	112	672	340	6,800
충주	3,674	51,864	15,559	36,305	1,544	9,264	2,130	42,600
제천	2,417	36,482	10,945	25,537	847	5,082	1,570	31,400
청원	4,597	78,402	23,521	54,881	967	5,802	3,630	72,600
보은	4,386	57,256	17,177	40,079	2,176	13,056	2,210	44,200
옥천	2,410	39,240	11,772	27,468	640	3,840	1,770	35,400
영동	1,160	20,680	6,204	14,476	180	1,080	980	19,600
증평	933	11,198	3,359	7,839	533	3,198	400	8,000
진천	1,817	26,022	7,807	18,215	737	4,422	1,080	21,600
괴산	2,226	30,016	9,005	21,011	1,036	6,216	1,190	23,800
음성	2,255	31,170	9,350	21,820	995	5,970	1,260	25,200
단양	673	10,198	3,059	7,139	233	1,398	440	8,800

서식 1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인

○ 주소 :

○ 성명 :

○ 전화번호 : 집)　　(핸드폰)

○ 브랜드참여 여부 :

□ 사육두수

총두수	암 소	비육우	송아지

□ 사업신청내역

계	혈통등록	인공수정
두	두	두

위와 같이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지원사업에 참여코자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시·군>

(단위 : 호, 두, 천원)

구 분	호 수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혈통등록							
인공수정							

서식 3

사업추진 완료 및 정산 보고

< 시·군>

(단위 : 호, 두, 천원)

세부 사업	계 획					실 적					도비 집행 잔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호 수	두 수	계	도비	시군비	호 수	두 수	계	도비	시군비	
계											
혈통등록											
인공수정											

※ A4횡으로 작성 제출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시 사업대상자별 지원내역 제출

서식 4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월)

연번	수정일자	바코드번호 (9자리)	KPN 정액번호	축주			보조금 (원)	농가 자필 서명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계								

○ 상호명 : 수정사(수의사) 성명 : (인)

○ 소재지 :

○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 면허번호 :

○ 계좌번호 및 예금주 :

붙임 : 한우인공수정 증명서 부.

2013. .

○○시장·군수 귀하

서식 5

자가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신청서(월)

년월일	정액구입량		자가인공수정실적			
	수량	금액	바코드번호	정액번호 (KPN)	정액단가	지 원 신청액
계						

상기와 같이 자가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정액대를 신청합니다

2013. . .

계좌번호 :

농가주소 :

성 명 : (서명)

※ 붙임 : 한우정액공급 확인서 사본(농협정액판매팀 발급)

○ ○ 시장·군수 귀하

3. 송아지생산 안정제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정책	엄주광	행)3713 일)220-371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DDA, FTA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기반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매년 연초 가임암소수의 90%이상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토록 추진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가입율(%)	95.0%	97.5	96.6	60.3	'13.12	(계약암소수/연초 가임암소수) × 100(%) * 가임암소수는 통계청의 자료 이용

4.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100%)	525	562	728	300	300
도 비(15%)	79	84	109	45	45
시군비(35%)	184	197	255	105	105
자부담(50%)	262	281	364	150	15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계약대상자 : 한우암소 사육농가중 희망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

3. 지원대상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계약대상우 : 한우 암소

○ 참여기간 : 2013. 1. 1 ~ 2013. 12. 31(1년간)

○ 청약신청기간 : 2012. 12. 1 ~ 2013. 5. 31(6개월)

○ 계약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축협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안정제 가입부담금(두당) : 계약자 10천원, 지자체 10천원

- 전년도 가입암소는 재계약시 부담금 면제

○ 보전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에 참여계약 신청

○ 관리수수료 등(축발기금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40만원/두)에서 지원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세부실시요령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사업량 및 사업비

○ 15,000두, 300백만원(도비 45, 시군비 105, 자담 150)

8.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지역축협과 협조하여 사업계획 공고 및 농가 홍보실시

- 계약기간이 5월말까지이므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 강화

○ 청약기간 만료후 계약체결 결과를 축협으로부터 제출받아 도 보고

○ 농가계약이 끝난후 2개월내에 계약암소의 허위계약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농가부담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반기별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운영상황 보고

9. 세부 추진요령 : 2013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참조

별첨 1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15,000**	**300,000**	**45,000**	**105,000**	**150,000**	
청주시	203	4,060	609	1,421	2,030	
충주시	1,730	34,600	5,190	12,110	17,300	
제천시	646	12,920	1,938	4,522	6,460	
청원군	2,765	55,300	8,295	19,355	27,650	
보은군	2,393	47,860	7,179	16,751	23,930	
옥천군	1,700	34,000	5,100	11,900	17,000	
영동군	795	15,900	2,385	5,565	7,950	
증평군	520	10,400	1,560	3,640	5,200	
진천군	955	19,100	2,865	6,685	9,550	
괴산군	1,428	28,560	4,284	9,996	14,280	
음성군	1,650	33,000	4,950	11,550	16,500	
단양군	215	4,300	645	1,505	2,150	

4. 가축시장(우시장) 현대화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정책	엄주광	행)3713 일)220-371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가축 거래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우량 송아지의 안정적인 판로 및 구매처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시장 현대화로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및 공정거래 확보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가축시장 현대화시설 추진실적(%)	50%	25.0%	37.5%	37.5%	'13.12	현대화시설 설치 가축시장(개소)/전체 가축시장(개소)*1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옥천군수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60, 시군비 140, 자담 200)

○ 지원대상 : 옥천영동축산농협

○ 사업내용 : 가축시장(우시장) 현대화시설을 위한 개·보수 및 건축비

- 부지구입비는 지원에서 제외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가림시설 및 계류장, 경매우 하차장 구조물, 전자경매 시스템, 사무실·휴게실 건축비 등

3. 세부 추진요령

가. 추진 체계

○ 도

- 사업계획 확정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 세부추진계획 적정 여부 검토 및 보고
- 보조금은 건축비 및 시설 설치, 개보수 용도로 지원
- 분기별 1회이상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독려 및 지도·감독
- 사업대상자가 사업완료 신고서 제출 시 자재구입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정산

○ 사업대상자(축협)

-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서식 1) 및 사업추진
-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경쟁입찰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추진
-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보조금 신청

나. 자금집행과 정산

○ 시·군은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 실시

○ 시·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실적과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검정을 실시하고 완료·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4.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사후관리

○ 사업추진 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2) :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

별첨 1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1**	**400,000**	**60,000**	**140,000**	**200,000**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1	400,000	60,000	140,000	200,000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서식 1

가축시장(우시장) 현대화시설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

○

2. 사업대상자 : (대표자 :)

3. 사업장위치 :

4. 세부시설 추진계획

세부시설	규격	단가	수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건축시설								
비가림시설								
계류시설								
전자경매시설								

5. 월별 세부추진일정

세부시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사업별 진도는 실선(↔)으로 표시

서식 2

사업추진 완료 및 정산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사업대상자 : **(대표자 :)**

3. 사업장위치 :

4. 사업완료 및 정산내역

세부시설	사업량 (㎡등)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도비 집행 잔액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5. 축사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정책	엄주광	행)3713 일)220-371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사내부 자동 제어시스템(온·습도조절, 소독, 분진제거) 설치로 쾌적한 축사 환경개선 및 가축질병 사전예방

2. 근거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4년까지 축사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 누계실적 400호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개소)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축사내부 연무소독 시설 설치농가(호)	113	-	-	150	'13.12	축사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 실적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 업 량 : 113호

○ 사 업 비 : 337.5백만원(도비 81, 시군비 121.5, 자담 135)

- 지원배율 : 도비 24%, 시군비 36%, 자담 40

○ 사업내용 : 축사내부 자동안개소독 분무시설 설치

2. 지원대상

○ 한육우·젖소 3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사육농가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에 한하여 지원(무허가축사 제외)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9,000천원(1,000㎡)이내/호당

· 1동(330㎡)기준 3,000천원

○ 단위 사업비에 미달시는 보조·자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단위 사업비 초과시는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4. 세부 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 도

- 사업계획 확정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사업홍보 및 사업신청서 접수
- 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수시 지도·감독 실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 농가

-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축산전문 시공업체)와 계약·추진
- 사업 완료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시군에 완료 신고 및 보조금 신청

나. 자금집행과 정산

○ 시군에서는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기성고에 의거 사업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 중간 정산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완료·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5.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가 최고 지원한도액보다 미달되게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군에서는 자체 판단하여 잔여 사업비 내에서 대상자 추가선정 등 조치

○ 당초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후 도에 보고

○ 시장, 군수는 지원시설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사후관리 실시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 식
사업신청서	사업자 → 시군	1. 31	서식 1호
대상자선정 및 보고	시군 → 도	2. 15	서식 2호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시군 → 도	· 사업종료후 20일이내	서식 3호

<별표 1>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113**	**337,500**	**81,000**	**121,500**	**135,000**	
청주	2	6,000	1,440	2,160	2,400	
충주	11	33,000	7,920	11,880	13,200	
제천	8	24,000	5,760	8,640	9,600	
청원	25	75,000	18,000	27,000	30,000	
보은	16	48,000	11,520	17,280	19,200	
옥천	9	27,000	6,480	9,720	10,800	
영동	5	15,000	3,600	5,400	6,000	
증평	5	15,000	3,600	5,400	6,000	
진천	10	30,000	7,200	10,800	12,000	
괴산	8	24,000	5,760	8,640	9,600	
음성	11	31,500	7,560	11,340	12,600	1개소 1,500천원
단양	3	9,000	2,160	3,240	3,600	

서식 1

축사내부 연무소독시설설치 사업 참여 신청서

□ 농가현황

성 명		연락처	집) 핸)
주 소			
사업장주소		건축물대장등재 축사면적	㎡
가축사육현황	축종 : 사육두수 :		

□ 신청내역

품 목	신 청 량	소요사업비
축사면적	㎡	천원

※ 1㎡당 약 9,000원 소요

상기와 같이 축사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사업에 참여코자 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시·군>

사업대상자		축종	사육 두수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주 소	성 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서식 3

사업추진 완료 및 정산 보고

< 시·군>

(단위 : 호, 두, 천원)

사 업 대상자	축종	사업량 (㎡)	사업비 집행실적								도비 집행 잔액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6. 육우 거세시술료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정책	엄주광	행)3713 일)220-371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육우 거세·비육 촉진을 통한 육질 등급 향상으로 육우브랜드 활성화 유도

○ 수입쇠고기와의 가격·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거세 소요경비 지원으로 고급육생산 참여의욕 고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육질 2등급 이상 출현율(%)	60.0	59.4	64.5	55.3	2013.12	'13.1~12월까지 육우 거세우 2등급 이상 출현율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

4.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240	180	180	180	180
도 비	72	54	54	54	54
시군비	168	126	126	126	126
자부담	-	-	-	-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 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을 등록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육우(젖소 수송아지)를 거세·비육하는 농가

○ 고급육 프로그램에 의거 16개월 이상 비육이 가능한 농가

○ 300두 이내 거세농가 우선 지원

○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사업기간 : 2013. 1~12월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거세시술료(6개월령 이내의 유혈거세만 인정) 지원

5. 지원비율

○ 지방비 보조 100%(도비 30%, 시군비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비 한도액 : 20천원/마리, 호당 350두 이내

○ 호당 지원한도액 : 7,000천원 한도

7.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9,000두	180,000 (100%)	54,000 (30%)	126,000 (70%)

8. 세부 추진요령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 사업신청(농가) → 대상자 선정 →

거세실시(공무원입회) →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완료 정산

○ 도

- 사업계획 확정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서식 2호) → 도
  · 신청자격 : 고급육프로그램에 의거 16개월이상 비육이 가능한 농가
- 시군에서는 도 배정량 범위 내에서 농가별 적정 배정
- 사업추진 지도 점검
  · 거세시 현장확인 입회 및 확인서 서명 날인 실시(유혈거세만 인정)
  · 거세우 비육 사양관리 지도
- 사업추진 실적 및 보조금 지급·정산(서식 4호)

○ 농 가

-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서식 1호)
- 거세확인서 작성(공무원 입회)제출 → 시·군(서식 3호)
- 사업비(보조금 신청) → 거세 확인서 첨부

○ 거세사업 참여농가는 시군과 전화 협의하여 거세 세부일정을 수립후 거세 신청

- 거세는 원칙적으로 농가 책임하에 실시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시군, 읍면동, 농업기술센터)으로 하여금 거세시 현장입회 확인하고 거세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계획 시달) 이전에 거세를 실시한 경우 시군에서 '13년 사업대상자로 적격하면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비 지급

○ 자금집행과 정산

- 시장·군수는 농가가 제출한 관련서류(거세확인서 등) 실적 확인 후 보조금을 입금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부정지급 사례 방지)
- 시장·군수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사업비를 중간 정산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완료·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9.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거세우 사후관리 지도 점검

○ 당초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장·군수는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후 사업실시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 식
대상자 선정 보고	시·군 → 도	1. 31	서식 2호
육우거세 확인서	농가 → 시·군	·즉 시 (거세후 당일발행)	서식 3호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시·군→ 도	·매분기익월 10일한 ·사업 종료후 20일이내	서식 4호

별첨 1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9,000**	**180,000**	**54,000**	**126,000**	
청주시	85	1,700	510	1,190	
충주시	175	3,500	1,050	2,450	
제천시					
청원군	6,400	128,000	38,400	89,600	
보은군	290	5,800	1,740	4,060	
옥천군	70	1,400	420	980	
영동군	100	2,000	600	1,400	
증평군	220	4,400	1,320	3,080	
진천군	610	12,200	3,660	8,540	
괴산군	100	2,000	600	1,400	
음성군	950	19,000	5,700	13,300	
단양군					

서식 1

육우거세 사업 참여 신청서

□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 사업계획

현 사육두수				연간 육우 출하두수	거세신청 두수	축산업 등록여부	출하처
계	육우	한우	젖소				

상기와 같이 육우거세 사업에 참여코자 신청합니다.

2013. . .

신청인 : (서명)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육우거세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시·군>

사업대상자			선 정 결 과			
주 소	성명	육우 사육두수	거세신청 두수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계						

서식 3

육우거세 확인서

□ 농가개요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

□ 거세내역

연번	바코드번호	개월령	거세방법	보조금 지급액(원)	거세일자
계					

※ 보조금 지급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상기와 같이 거세를 하였기 확인합니다.

2013.　　.　　.

농가명 :　　(서명)

확인자(공무원) : 소속　　직급　　성　명 :　　(서명)

○○시장·군수 귀하

서식 4

사업추진 완료 및 정산 보고

<　　시·군>

(단위 :두, 천원)

사 업 대상자	사업량		사업비 집행실적						도비 집행 잔액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7.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정책	엄주광	행)3713 일)220-371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젖소의 유전능력을 개량하는데 소요되는 선형심사비 및 정액대 지원

○ 등록료 및 검정비 지원으로 개체별 능력우 관리 및 개량방향 제시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젖소검정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09-363, '09.9.16)

3. 성과목표 및 지표

○ 검정사업 참여확대 및 두당 산유량 증가

- '14년까지 검정우 참여율 85%, 두당 산유량 10,000kg 달성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유우검정 참여율(%) - (검정우/경산우)	82	78	79	80	2013.1	농협중앙회 젖소개량부에서 발표하는 행정구역별 검정사업 실적으로 산출
▪ 검정우 두당 연간 산유량(kg)	9,980	9,844	9,910	9,95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9	'10	'11	'12	'13	'14년이후
사업량(천두)		7	6.3	6.3	6.3	6.3	6.3
사업비	합 계	350	315	315	315	315	315
	국 비						
	도 비	105	95	94.5	94.5	94.5	94.5
	시군비	245	220	220.5	220.5	220.5	220.5
	자부담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대상 :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사업 참여 희망농가(신규농가 포함)

○ 검정기관 : 농협중앙회 젖소개량부, 한국종축개량협회, 충북낙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젖소검정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09-363) 및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에 의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젖소 선형심사비, 정액대, 혈통등록료, 검정료

4.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두당 50천원

○ 두당 지원범위 : 정액대 20, 등록비 8, 선형심사비 12, 검정료 10

6. 사업량 및 사업비

지원내용	사업량(두)	사 업 비(천원)			지원단가(한도액)
		계	도 비(30%)	시군비(70%)	
계	**6,300**	**315,000**	**94,500**	**220,500**	**두당 50천원**
정 액 대	6,300	126,000	37,800	88,200	20천원/두당(1앰플)
혈통등록비	6,300	50,400	15,120	35,280	기초,혈통 : 7~10천원/두 고등 : 20천원/두
선형심사비	6,300	75,600	22,680	52,920	12천원/두당
검 정 료	6,300	63,000	18,900	44,100	종개협 1,800원/두,월 충북낙협 2,500원/두,월

※ 시군별 사업량 및 사업비 : 따로붙임(별첨 1)

※ 정액대 및 혈통등록비가 두당 지원단가 이하인 경우 남은 금액은 검정료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7. 세부추진요령

1 세부실시요령

가. 대상축 선정

○ 기초등록 이상 어미소에서 태어난 미경산우 및 경산우로 혈통등록이 가능한 자질 및 능력이 좋은 건강한 젖소

○ 검정대상우가 폐사, 도태, 사고시 종축개량협회에 대상축 재선발 의뢰

나. 대상축 선형심사 및 혈통등록

○ 시·군에서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대상축에 대한 선형심사 및 혈통등록 의뢰(기 등록을 필한 소는 제외)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선형심사 후 개체별로 적합한 우수정액을 선정하여 시·군 및 농가에 개별통보

다. 인공수정

○ 농가에서는 한국종축개량협회로부터 추천된 우수정액으로 수정하고 수태가 되지 않을 때에는 농가 자부담으로 추천정액 활용

○ 농가는 공급받은 정액의 정액증명서를 필히 교부받을 것

라. 검정사업

○ 시·군에서는 농가별 검정대상우를 종축개량협회 및 충북낙협에 의뢰

○ 검정 수행기관에서는 검정결과를 시·군 및 농가에 개별통보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검정료 청구

○ 검정기관에서는 분석한 정보를 전산망을 통하여 농협중앙회 젖소개량부로 이송

2 추진체계

○ 도

- 지원계획 확정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교부

○ 시·군

- 검정기관과 협의하여 대상 농가를 선정
- 대상자 우선순위 : ①기존 검정사업 참여 농가 ②신규참여 농가
-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정액대, 등록료, 선형심사비, 검정료) 확정후 사업대상자 및 대상우를 검정기관 및 해당농가에 통보

○ 검정기관 추진사항

- 종축개량협회에서는 시·군에서 사업대상자가 통보되면 대상우에 대한 등록 및 선형심사, 혈통등록을 4월까지 완료하고 결과(농가별, 개체별)를 해당 시군 및 농가에 개별 통보
- 젖소검정을 관련규정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고, 검정우의 개체별 검정성적을 3년 이상 기록관리 유지
- 검정성적표는 매월 해당시군 및 농가에 통보
  · 시·군에서는 개체별 검정실시 확인 자료로 사용
  · 농가에게 검정성적표를 설명해주고 경영 및 사양관리에 반영토록 지도
- 검정사업 완료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시군·농가에 통보하여 젖소개량에 활용토록 조치
- 검정우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교배 종모우 지정 통보

○ 검정농가

- 젖소능력검정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농가 → 시·군
- 검정우는 반드시 등록시켜야 함
- 종축개량협회의 선형심사 및 혈통등록 업무, 검정원의 원활한 검정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선형심사 결과 종개협에서 추천한 우수한 정액으로 인공수정 실시
- 농가는 검정성적표를 활용하여 젖소개량 및 목장경영 개선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계획 시달)이전에 사업시행 된 경우 시군에서 '13년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면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비 지급

3 자금집행과 정산

○ 사업실적 확인

- 정액대 :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계산서 등
- 등록 및 선형심사 : 종축개량협회에서 발급하는 등록 및 선형심사 결과표(등록·선형심사 전산입력자료)
- 검정료 : 검정기관에서 매월 송부하는 검정성적 기록표

○ 사업비 지급방법

- 선형심사료, 인공수정료, 혈통등록비 : 실적 확인후 지급
- 검정료 : 실적확인후 분기별 지급

8.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사업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관련 증빙자료를 징구 확인, 검정하고 사업비 집행후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허위보고 작성 농가는 사업대상 제외조치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보고기한	보고서식
사업참여 신청	농가 → 시·군	1. 20	서식 1호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시·군→도, 검정기관	1. 31	서식 2호
검정대상우 등록 및 선형심사, 검정결과 통보	검정기관 → 시·군	4. 30	종축개량협회작성
사업추진완료 및 정산보고	시·군 → 도	12. 31	서식 3호

별첨 1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6,300**	**315,000**	**94,500**	**220,500**	
청주시	120	6,000	1,800	4,200	
충주시	360	18,000	5,400	12,600	
제천시	40	2,000	600	1,400	
청원군	2,290	114,500	34,350	80,150	
보은군	740	37,000	11,100	25,900	
옥천군	170	8,500	2,550	5,950	
영동군	350	17,500	5,250	12,250	
증평군	160	8,000	2,400	5,600	
진천군	1,190	59,500	17,850	41,650	
괴산군	220	11,000	3,300	7,700	
음성군	660	33,000	9,900	23,100	
단양군					

서식 1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지원 참여신청서

□ 신청자현황

○ 목장명 :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 농장 소재지 :

□ 사육두수 : 두(초임우 , 착유우 , 건유우 , 육성우)

□ 신청내역

구 분 두 수	사업비 투자계획(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기검정우
정 액 대					: 두
혈통등록비					
선형심사비					○신규참여
검 정 비					: 두

상기와 같이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지원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 총 괄

(단위 : 호, 두, 천원)

구분	계획						비 고
	호수	사업량	사업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기검정우 : 두 ○신규참여 : 두
정 액 대							
등 록 료							
선형심사료							
검 정 료							

□ 대상자 선정내역

주 소	성 명	사 육 두 수	사업참여 두수			
			정액대	등록료	선형심사료	검정료
합 계						

서식 3

유우군 능력검정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구 분	계 획						실 적						도비 집행 잔액 (원)
	호수	사업량	사 업 비(천원)				호수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정액대													
등록료													
선형심사료													
검정료													

8. 낙농헬퍼(도우미)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정책	엄주광	행)3713 일)220-371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낙농가에게 휴식제공과 노동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낙농 생산성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으로 안정적인 낙농업 경영 유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3. 성과목표 및 지표

○ 착유농가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용호수 확대

- 낙농헬퍼 이용을 '14년까지 착유농가의 80%이상 이용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착유농가	342	394	345	342	'13.12	시·군 및 충북낙협의 추진실적을 근거로 산출
▪ 이용농가	267	278	234	256		
▪ 이용실적(%) -(이용농가/착유농가)	78	77	68	75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13	'14년이후
사업량(일수)		900	800	778	800	800
사업비	합 계	135	120	117	120	120
	국 비					
	도 비	32	29	28	25.2	25.2
	시군비	76	67	65	58.8	58.8
	자부담	27	24	24	36.0	36.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대상 : 착유농가로서 헬퍼이용 희망농가(낙우회 등)

○ 사업수행기관 : 충북낙농업협동조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착유농가로서 헬퍼사업 희망 농가 및 생산자단체 (낙우회 등)

○ 우선순위 :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 참여농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헬퍼(도우미)요원이 대행하는 착유 등 목장관리 인건비 지급

4. 지원비율

○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150천원/1일(할증료는 농가 전액 자부담)

○ 지원한도 : 호당 연간 10일 이내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음

구 분		지 원 단 가	비 고
기 본 료 (착유우 기준)		○ 20두까지 : 150천원	- 착유두수가 20두 이하인 경우도 기본료 동일
할증료	착 유 우	○ 20두초과 두당 3천원	- 농가 전액자부담
	휴일할증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호당 30천원 (농가 전액 자부담)	○ 휴일할증과 애·경사 중복시 할증료 제외 (사망신고서, 청첩장 등 첨부)

※ '12년 미이용(사업포기) 농가는 지원 제한, 호당 연간 10일이내에서 배정일수 탄력적 이용

6.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 비 (21%)	시군비 (49%)	자 담 (30%)
800일	120,000	25,200	58,800	36,000

7. 세부추진요령

1 충북낙농업협동조합

○ 낙농헬퍼(도우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전문헬퍼 선발(2명 1팀) : 축산업에 종사하였거나, 낙농관련 단체에서 교육을 필하였거나 낙농업에 종사, 관계기관에서 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자를 헬퍼(도우미)요원으로 선발

○ 농가에서 애경사로 헬퍼(도우미) 신청시 헬퍼요원 우선 배정

2 낙농헬퍼(도우미) 지원 및 사업비 집행

○ 지원대상자 : 젖소 착유농가

○ 헬퍼이용 희망농가 및 낙우회에서는 매월 20일까지 익월의 이용 예정일 및 헬퍼이용 농가명단을 충북낙협으로 신청

○ 헬퍼(도우미)는 충북낙협에서 이용농가 배정시 임무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이용확인서에 농가 확인서명을 받아 충북낙협에 제출

○ 충북낙협에서는 이용확인서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이용료를 산정 추진실적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당 농가 소속 시·군에 익월 10일까지 보조금 신청(서식 별도 송부)

○ 시·군에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을 검토 후 이상이 없을시 보조금을 충북낙협에 교부

○ 충북낙협에서는 농가에서 자부담 징구하여 보조금과 자담분을 헬퍼(도우미)요원에게 개별계좌에 입금처리

8.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낙농헬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계획시달) 이전에 이용한 경우 사업수행기관 확인 후 적정하면 '13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이용료 지급

○ 공통사항 : 시·군 및 사업수행기관에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기한	서 식
사업참여 신청서	농가,낙우회 → 시·군	1. 20	서식 1호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시·군→ 도,사업수행기관	1. 31	서식 2호
보조금 지급 요청	사업수행기관 → 시·군	·익월 10일까지 (헬퍼이용 확인서 첨부)	서식 4호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시·군, 사업수행기관 → 도	12. 31	서식 3호

별첨 1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일, 천원)

구분	배정량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800**	**120,000**	**25,200**	**58,800**	**36,000**	
청주시	20	3,000	630	1,470	900	
충주시	50	7,500	1,575	3,675	2,250	
제천시	20	3,000	630	1,470	900	
청원군	320	48,000	10,080	23,520	14,400	
보은군	85	12,750	2,677	6,247	3,826	
옥천군	16	2,400	504	1,176	720	
영동군	20	3,000	630	1,470	900	
증평군	24	3,600	756	1,764	1,080	
진천군	120	18,000	3,780	8,820	5,400	
괴산군	30	4,500	945	2,205	1,350	
음성군	95	14,250	2,993	6,983	4,274	
단양군						

서식 1

낙농헬퍼(도우미)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신청 현황

<개별농가>

사 업 대 상 자			이용신청 일 수	사육두수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계	착유우	기 타

<낙우회 등>

사 업 대 상 자			이용신청 일 수	사육두수		
신청단체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계	착유우	기 타

※ 개별농가 신청내역 첨부

상기와 같이 낙농헬퍼(도우미) 사업에 참여코자 신청합니다.

2013. . .

신청단체(농가)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낙농헬퍼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사 업 대 상 자				선 정 내 역				
주 소	성명	착유두수	신청일수	배정일수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서식 3

사업추진 실적 정산보고

<○○시·군명>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도 비 집 행 잔 액 (원)
	호수	이용일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획							
실 적							
비 율							

서식 4

낙농헬퍼(도우미) 이용 확인서

□ 헬퍼요원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

□ 헬퍼이용내역

낙농헬퍼 이용자			헬퍼이용내역		기 본 이용료 (천원)	할증료 (천원)	농가확인 (자필서명)
주　소	성 명	착유 두수	이용 기간	이용 일자			
계							

상기와 같이 낙농헬퍼(도우미) 이용 실적을 확인합니다.

헬퍼요원 성명 :　　(서명또는인)

2013.　　.　　.

충북낙농업협동조합장 귀하

9. 젖소농가 첨단 발정탐지기 보급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정책	엄주광	행)3713 일)220-371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젖소의 발정상태를 조기에 검사 탐지하여 적기 수정을 통한 수태율 향상으로 낙농가 소득증대 및 낙농산업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3. 성과목표 및 지표

○ 착유농가의 수태율 향상 및 산유량 증대를 위해 발정탐지기 보급

- 낙농헬퍼 이용을 '15년까지 착유농가의 80%이상 보급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착유농가 발정탐지기 보급률(%)	100				2013.12	발정탐지기 설치농가/착유농가*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13	'14년이후
사업량(호수)					100	200
사업비	합 계				600	1,200
	국 비					
	도 비				90	180
	시군비				210	420
	자부담				300	6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 사 업 량 : 100호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90, 시군비 210, 자부담 300)

- 지원단가 : 호당 6,000천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2. 사업내용

○ 젖소 수태율 향상을 위한 발정탐지기 설치

- 구성품목 : 메인콘트롤 박스 1대, 안테나 수신기 1set, 목걸이 30개이상, 프로그램 설치, 기타 필요품목 등

3. 대상자 선정기준

○ 1일 착유량 500kg 이상 우선지원

○ 젖소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우선지원

○ 낙농후계자 확보 농가 우선 지원

4.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13. 1월 ~ 12월

3. 세부실시요령

○ 발정탐지기 사업대상자가 원하는 기기로 지원하되 사후 서비스가 용이한 장비를 설치하도록 농가 지도

○ 발정탐지기 설치기준

- 발정탐지기 구성품목을 전문기기 취급 유자격 업체로부터 설치하고 A/S가 가능한 업체 선정

○ 사업비가 초과하여 소요될 경우에는 초과분은 사업대상자가 자부담으로 추진

○ 시군에서는 추진사항을 수시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본 사업이 조속·완료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

○ 사업비 집행은 시장·군수의 사업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하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고 즉시 집행

○ 사업추진요령에 따라 발정탐지기를 설치한 후 아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 신고 및 보조금 신청

【관련서류】

- 세금계산서 1부, 자부담금 집행자료 1부,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계약서 및 기타 필요서류 등

○ 사업비는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집행

○ 사업 추진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때에는 시·군에서 사업적임자를 선정하여 대상자 변경조치 후 결과를 도에 보고

다. 행정사항

○ 해당 시·군에서는 추진사항을 수시로 현지점검 하여 사업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조치

라.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2012. 2. 15일까지

○ 사업완료보고 : 사업완료후 20일 이내

별첨 1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호)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100**	**600,000**	**90,000**	**210,000**	**300,000**	
청주시	3	18,000	2,700	6,300	9,000	
충주시	7	42,000	6,300	14,700	21,000	
제천시	2	12,000	1,800	4,200	6,000	
청원군	37	222,000	33,300	77,700	111,000	
보은군	9	54,000	8,100	18,900	27,000	
옥천군	2	12,000	1,800	4,200	6,000	
영동군	5	30,000	4,500	10,500	15,000	
증평군	3	18,000	2,700	6,300	9,000	
진천군	17	102,000	15,300	35,700	51,000	
괴산군	3	18,000	2,700	6,300	9,000	
음성군	12	72,000	10,800	25,200	36,000	
단양군						

서식 1

젖소 첨단발정탐지기 사업 참여신청서

□ 신청자현황

○ 목장명 :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 농장 소재지 :

□ 사육두수 : 두(초임우 , 착유우 , 건유우 , 육성우)

□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량 (세트)	사업비 투자계획(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상기와 같이 젖소 첨단발정탐지기 지원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사업대상자		사육 두수 (착유 두수)	1일 착유량 (kg)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주 소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						

서식 3

□ 사업완료보고

사 업 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도비 집행 잔액
			계 획				실 적				
주 소	성 명		계	도비	시군 비	자담	계	도비	시군 비	자담	

10. 축사지붕 태양광시설 설치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정책	엄주광	행)3713 일)220-371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사지붕 태양광시설 설치로 전기료 절감 및 저탄소 녹색축산 실현

○ 축사지붕의 복사열을 완화시켜 가축의 고온스트레스 감소로 생산성 향상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사지붕 태양광시설 설치 50개소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축사지붕 태양광시설 설치	12				2013.12	축사지붕 태양광시설 설치 실적(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13	'14년이후
사업량(개소)					12	12
사업비	합 계				408	408
	국 비					
	도 비				73.5	73.5
	시군비				171.5	171.5
	자부담				163	163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 사 업 량 : 12호(10KW기준)

※ 사업량(호수, 계약전력 등) 및 사업비는 수요조사 및 설치가능 현지실사를 거쳐 '13. 1회 추경예산에 최종 확정

○ 사 업 비 : 408백만원(도비 73.5, 시군비 171.5, 자부담 163)

- 지원단가 : 호당 34백만원(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2. 사업내용

○ 축사 지붕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설치비 지원(호당 3~10KW)

- 설치 가능한 축사가 없을 경우 10kw 초과할 수 있음

3. 대상자 선정기준

○ 축산농가 중 축사 지붕에 태양광시설 설치가능 한 농가

○ 설치가능 축사

- 건축연도 : 최근 2~3년이내 건축된 축사
- 용도지구 : 농업진흥구역 이외
- 지붕면적 및 방향 : 100㎡이상/남향, 동남향
- 운영방법 : 자가운영
- 발전기간 : 15년
- 구 조 물
  - 마감재 : 샌드위치판넬 지붕 또는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 기 둥 : H빔이나 두꺼운 각파이프를 사용한 구조물

4. 지원조건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13. 1월 ~ '13. 12월

3. 세부실시요령

○ 수요조사 → 현지 실사 및 설치적합 여부 판정 → 태양광 시설 설치

○ 설치조건 : 20년 이상 보증업체 선정 설치

- 태양광발전소 시설 설치 유자격 업체로부터 설치

○ 운영방법

- 자가운영 : 축사소유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

○ 사업비가 초과하여 소요될 경우에는 초과분은 사업대상자가 자부담으로 추진

○ 시군에서는 추진사항을 수시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본 사업이 조속·완료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

○ 사업비 집행은 시장·군수의 사업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하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고 즉시 집행

○ 사업추진요령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설치한 후 아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 신고 및 보조금 신청

【관련서류】

- 세금계산서 1부, 자부담금 집행자료 1부,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계약서 및 기타 필요서류

○ 사업비는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집행

○ 사업 추진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때에는 시·군에서 사업적임자를 선정하여 대상자 변경조치 후 결과를 도에 보고

다. 행정사항

○ 해당 시·군에서는 추진사항을 수시로 현지점검 하여 사업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 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조치

라.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2012. 1. 31일까지

○ 사업완료보고 : 사업완료후 20일 이내

별첨 1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서식 1

축사지붕 태양광 시설 설치사업 참여신청서

□ 신청자현황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 농장 소재지 :

○ 축종 및 사육두수 : /

□ 축사현황

용도 지구	축 사 현 황					비 고
	건축연도	지붕면적 (㎡)	축사지붕 방향	지붕재질	구조물 (H빔 등)	

□ 사업비 투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KW)	사업비 투자계획(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상기와 같이 축사지붕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사업대상자		축종	계약 전력 (kw)	사 업 비(천원)			
주 소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서식 3

□ 사업완료보고

사 업 자		사업량 (계약 전력)	사 업 비(천원)								도비 집행 잔액
			계 획				실 적				
주소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11. 축사시설 현대화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정책	엄주광	행)3713 일)220-371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총 괄

○ 축종별 전업농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융자) 대상자 구분

○ 현행방식 : 보조(30%) + 융자(50%) → 전업농~기업농 미만

* 전업농 미만 농가는 전업농수준까지 확대시 지원 가능

○ 이차보전방식 : 융자(80%) → 기업농이상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종돈 모돈 3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육용종계 15,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종오리 2,5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축종별 지원 한도액>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상한액	축사 및 축산시설(백만원,)			
			보조+융자(전업농)		이차보전(기업농)	
			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	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
한(육)우		216천원/㎡	300	350~700㎡	400	700㎡~
양 돈		550천원/㎡	1,250	800~1,600㎡	5,000	1,600㎡~
양계	산란계	602천원/㎡	1,150	1,380~2,300㎡	5,000	2,300㎡~
	육 계	304천원/㎡	850	1,380~2,300㎡	3,000	2,300㎡~
	육용종계	380천원/㎡	1,150	3,300~6,600㎡	3,000	6,600㎡~
	부화장(육용종계용)	1,260천원/㎡	1,350	1회 입란규모 300~600천개	3,000	1회 입란규모 600천개~
오리	육용오리	304천원/㎡	800	1,230~2,460㎡	3,000	2,460㎡~
	종오리	380천원/㎡	1,100	1,665~3,300㎡	5,000	2,631㎡~
	부화장	1,260천원/㎡	1,350	1회 입란규모 100~200천개	3,000	1회 입란규모 200천개~
낙 농		216천원/㎡	400	540~1,080㎡	500	1,080㎡~
흑염소, 꿀벌, 양록		150천원/㎡	120	전업규모	700	전업규모의 2배~

2 개선 내용

가. 사업기준 개선

❑ 전업농미만 농가도 현행 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전업농가 지원(단, 전업농미만 농가는 전업농규모로 축사 확대시 지원) → (개선) 준전업농은 전업규모로 확대하지 않아도 현행 면적으로도 지원(준전업농가가 축사시설 확대를 희망시는 현행과 같이 전업규모까지 지원)

- 사육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동 사업목적인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도모에 한계가 있어 준전업농이상 농가에만 적용

* 준전업규모 : 전업농의 1/3수준 이상(예 : 한우의 경우 16마리 이상)

❑ 기업농 기준 상향

○ 전업농에 지원하는 예산(보조+융자)이 남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농기준을 상향하여 전업농(보조+융자) 구간을 확대

- 현재 설정된 기업농(전업농의 2배)이 대규모 농가라고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현실에 맞게 전업농의 3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전업농 기준 : 농가 부부가 전업으로 가축 사육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 정도

→ 기업농기준을 전업농의 3배 수준으로 확대시 '13년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지원방식별 대상자 범위 조정

구 분	보조+융자방식		이차보전
	준전업	전업	기업
한육우	112~350㎡미만	350~1,050㎡미만	1,050㎡~
젖 소	173~540㎡미만	540~1,620㎡미만	1,620㎡~
양 돈	264~800㎡미만	800~2,400㎡미만	2,400㎡~
육 계	460~1,380㎡미만	1,380~4,140㎡미만	4,140㎡~
산란계	460~1,380㎡미만	1,380~4,140㎡미만	4,140㎡~
오 리	408~1,230㎡미만	1,230~3,690㎡미만	3,690㎡~

❑ 축사시설단가 상향 조정

○ 우선 축종별 지원 단가를 현행 수준의 120%로 상향 적용

- 축종별 소관 단체 및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가를 조정하여 추가 시달 예정(현재 의견조회 중)

* 농가지원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제 공사비로 정산되기 때문에 단가 현실화로 인한 과도한 지원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Ⅲ. 세부추진요령 : 2013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12.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정책	엄주광	행)3713 일)220-371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말산업을 FTA시대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말산업 인프라 확충 분야 지원

2.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어촌형 승마시설 확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3개소			2	매년 1월	○ '13년말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 '12년말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1,332**			미정	미정
보 조	200				-
융 자	300				-
지방비	200				-
자부담	632				-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공공승마시설 : 지자체, 대학

○ 민간승마시설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승용마구입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승용마구입 사업대상에 공공시설 운영자는 제외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시범) : 지자체, 농축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공승마시설

-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지자체는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 체결 후 승마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민간승마시설

- 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 한정함)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승용마 구입

- 중장기 승용마 사육계획 및 승마시설 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자

* 공공승마시설 운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승용마 구입자는 말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말을 구입해야 함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지자체 또는 농축협이 말 사육농가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와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은 말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말에 한정함

○ 공통 요건

- 신규 설치 지원된 승마시설은 완공 이후 말산업육성법 제15조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신고하여야 함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 말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3. 지원 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공공승마시설 :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 관리사,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및 관련 시설,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창고, 퇴비사 등 승마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 외승주로 개설 및 설치, 승마길 조성 등

* 부지 구입비, 외승주로 및 승마길 조성을 위한 땅 구입비는 제외

○ 민간승마시설 : 공공승마시설과 같음

* 다만, 승마길 조성은 지원 제외

○ 승용마구입 : 승용마(등록된 말에 한정함) 구입비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승용마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

4. 지원형태

(단위: %)

내역 사업명		보 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융자조건
○ 승마시설	공 공	40	40	2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연리 4%(농업인 3%) *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담으로 부담
	민 간	20	20	30	30	
○ 승용마(번식용 포함) 구입		-	-	70	30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50	50	-	-	
	농축협	50	-	-	50	
○ 제주마 혈통보존		50	50	-	-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말함

5. 개소당 총사업비 및 지원 한도액

(단위: 백만원)

내역 사업명		총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고보조	지방비	융 자		
○ 승마시설	공 공	2,000	800	800	400	-	* 총사업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담으로 추진
	민 간	700	140	140	210	210	
○ 승용마(번식용 포함) 구입		100	-	-	70	30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3,000	1,500	1,500	-	-	
	농축협	3,000	1,500	-	-	1,500	
○ 제주마 혈통보존		500	250	250	-	-	

* 승용마 구입은 개소당 5마리 이내, 마리당 2천만원(융자14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가 초과분은 자담으로 추진

* 공공승마시설은 지자체가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비 및 융자 부문은 매칭할 수 있음

Ⅲ. 세부추진요령 : 2013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13. 가축계열화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정책	임진우	행)3715 일)220-3715

1. 목 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축산물의 시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가축계열화 참여율 제고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가축계열화율					2013.1	가축계열화사업자 도축두수/ 총 도축두수 × 100
- 양돈	22	21	20			
- 양계	85	75	85			

4.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8,000	5,290	2,002	3,000	3,000
융 자	5,600	3,700	1,400	2,000	2,000
자부담	2,400	1,590	602	1,000	1,000

5. 사업시행요령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확정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별표1>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지 원 범 위	지 원 조 건	비 고
1. 계열주체사육시설	○ 계열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 및 사육시설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4%(농·축협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2. 계열농가생산시설	○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	- 사업비의 70%이내 - 연 3%(변동이 있을 수 있음)	지원조건은 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과 동일
3. 가공시설(육가공공장, 난가공장, 계란집하장 등)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과 동일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4%(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4. 유통시설	○ 유통에 필요한 판매장·시설·장비 등	〃	
5. 계열화사육비	○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주체 등 ○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 총사업비의 50%이내 - 연리4%(농·축협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년이내 상환	

※ 사료제조시설,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별표2>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보고

1. 현 황

○ 지 정 년 도 :

○ 축 종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주 소 :

2. 사업장 건설(계획,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완료 예정일	총투자계획			'13년 계획			'13년 실적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진척도 (%)
계열주체사육시설 ( )												
계열농가생산시설												
축분처리시설												
도축장												
육가공공장												
계란집하장												
판 매 장												
저장시설												

주) ○ 축종 및 계열화사업자별로 해당사업명을 선택하여 기재

○ 계열주체 사육시설란의 ( )에는 「별표1」 지원범위를 선택 기재

3.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구 분		'13년 계획		실 적			
				상반기		하반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계열농가 확 보	호 수						
	총사육규모						
자재공급	자 축						
	사 료						
생 산	계열생산						
	외부구매						
	기 타						
	도 축 량						
판 매	자체유통						
	상인유통						
	기 타						
	수 출						
	합 계						

* 협의체 활성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별표3>

(양돈,양계,오리)계열화 지정업체 운영실태

상 호				지정 연도	
대표자				전화	
				팩스	
주 소					
직영·위탁·계약 농가 상시사육	GGP모돈(원종계)	F1모돈(종계)	비육돈(실용계)	계	
	두(천수)				
계열농가에 종돈·종계 공급 (연간)	직영·계열 자체생산(A)	계열업체가 공동구매·공급 (OEM 등)	계열농가가 개별구입	계(B)	자체공급율 (A/B)
	두(천수)				%
생 산 (연간)	구 분	직영 (C)	위탁 (D)	계 약	일반 구매	계 (E)	자체생산율 (C+D)/E
	호수(호)						
	두수(두)						
사료공급 (연간)	직영·계열업체 생산(F)	공동구매 (OEM 등)	농가 개별구입	계(G)	자체공급율 (F/G)		
	톤				%		
도 축 (연간)	자체시설(H)	외부위탁	계(I)	자체도축율 (H/I)			
	두(천수)		* 생산두수(E)와 같아야 함	%			
판 매 (연간)	자체유통 (J)	상인유통	수 출 (K)	2차가공 (L)	기 타	계(M)	자체판매율 (J+K+L/M)
	톤						%
향후 계획	연도	계열 농가수	생산량	자체생산율	자 체 사료생산율	자체시설 도축율	자체 판매율
	2012년	호	두/년	%	%	%	%
	2013년						
	2014년						

* 직영 : 계열업체가 자축 및 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직접생산하는 경우
* 위탁 : 계열업체가 자축소유, 농가에 위탁사육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 계약 : 농가가 자축소유, 계열업체와 농가간 일정물량 공급계약 체결하는 경우

14. 고능력 돼지액상정액 공급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정책	임진우	행)3715 일)220-371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재개 대비 규격돈 확보

○ 우수정액 공급으로 육질개량 및 품질향상

2. 근거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3.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 물돼지 출현율 0.4%이하 유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등급판정결과 물돼지출현율 (충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축산물등급판정결과(%)	0.4	1.0	0.4	0.4	2013.1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등급판정 결과 물돼지 출현율(충북)

4.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량(천두)		396	60	60	60	60
사업비	합 계	5,911	900	900	900	900
	도 비	591	90	90	90	90
	시군비	2,365	360	360	360	360
	자부담	2,955	450	450	450	45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도내 양돈농가(대기업 직영농장, 종돈장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도내 양돈농가 중 축산업 등록제 등록대상으로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 제외

3.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PSS(돼지스트레스증후군)유전자 미발현 고능력 종돈정액 공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돼지 액상정액 구입비 지원

5.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두당 연간 액상정액 사용량 6팩까지 인정

○ 단위 사업비에 미달시는 보조·자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단위 사업비 초과시는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7.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 비 (10%)	시군비 (40%)	자담 (50%)
60,000두	900,000	90,000	360,000	450,000

※ 산출단가 : 1두분 15천원(액상정액 2팩 기준)

8. 세부 추진요령

가.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 **사업대상자 선정** → **농가 AI센터 계약** →
AI센터 액상정액 공급 →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완료 정산**

○ 도

- 사업계획 확정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확인 및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AI센터로부터 액상정액 공급사업 참여 신청서 징구
- 액상정액 공급기준에 맞는(PSS 음성돈) 정액 공급여부 지도·감독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 보조금은 농가에 계좌입금 조치
  - 농가는 보조금 및 자담분 포함 AI센터와 계약한 금액을 정산
  - 보조금 지급시 축산법 제18조규정에 의한 정액증명서(축산법 시행규칙 제23조 별지11호서식)를 농가로부터 징구하여 확인후 보조금 정산

○ 농 가

- 사업대상자 참여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을시 AI센터와 공급계약 체결
- AI센터로부터 액상정액 수령
- 매월 사업추진실적 제출
- 시군에 보조금 신청시 축산법 제18조규정에 의거 AI센터에서 발급하는 정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 **액상정액 공급업체(AI센터)**

-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 시·군
  · 정액등 처리업 등록증
  · 액상정액 공급 각서
  · 개체별 혈통등록 증명서(PSS 유전자 발현여부 표기된 것)
  ※ 유전자형 : 정상(NN), 보유(Nn), 발현(nn) 표기
- 농가 공급 요구일에 액상정액을 농가까지 공급
- 매월 농가별 액상정액 공급내역 제출
- 액상정액을 농가에 공급할 때는 축산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정액 증명서(축산법시행규칙 제23조 별지11호서식)를 반드시 농가에 교부

나. 자금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사업비를 중간 정산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의 실적과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완료·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다.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고능력액상정액 공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규격미달 액상정액이 공급되었을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장·군수는 대상자 변경조치후 도에 보고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 식
① 사업참여 신청서	농 가 → 시·군 AI센터 → 시·군	1. 25	서식 1호 서식 2,3호
② 대상자선정 및 보고	시·군 → 도	2. 8	서식 4호
③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시·군 → 도	매분기익월 10일한 사업종료후 20일이내	서식 5호

<별표 1>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60,000**	**900,000**	**90,000**	**360,000**	**450,000**	
청주시	400	6,000	600	2,400	3,000	
충주시	7,800	117,000	11,700	46,800	58,500	
제천시	3,000	45,000	4,500	18,000	22,500	
청원군	9,000	135,000	13,500	54,000	67,500	
보은군	2,000	30,000	3,000	12,000	15,000	
옥천군	900	13,500	1,350	5,400	6,750	
영동군	1,900	28,500	2,850	11,400	14,250	
증평군	2,000	30,000	3,000	12,000	15,000	
진천군	13,500	202,500	20,250	81,000	101,250	
괴산군	13,500	202,500	20,250	81,000	101,250	
음성군	6,000	90,000	9,000	36,000	45,000	
단양군	0	0	0	0	0	

<서식 1>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연 락 처			
주 소					
□ 양돈사육현황					
사육규모	두 (모돈 두)				
□ 사업신청 내용					
공급 희망 물량	액상정액 공급 AI센터명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 비 (10%)	시군비 (40%)	자 담 (50%)
팩					

상기와 같이 고능력 액상정액 지원사업에 참여코자 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AI센터 일반현황

○ 주 소 :

○ 성 명 :

○ AI센터 등록번호 :

○ AI센터 명칭 :

□ 보유종모돈 현황

구 분	품종별 종모돈 현황					
	L	Y	D	H	기타	계
사육두수						
혈통등록두수						
PSS음성두수						

상기와 같이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지원사업에 참여코자 합니다.

붙임 1. 정액등처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액상정액 공급각서 1부

3. 개체별 혈통등록증명서 1부(PSS 유전자 발현여부 표기 된 것)

2013년 월 일

○○AI센터 대표 :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액상정액 공급 각서

본 AI센터는 충청북도 돼지액상정액(PSS 음성돈) 지원사업에 참여 함에 있어서 사업 지침을 성실히 따를 것을 서약하며 만약 다음 사항을 이행치 못할 경우 기 공급한 액상정액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액상정액은 PSS유전자 검사결과 음성돈에서 생산된 정액을 공급한다.
2. 액상정액 생존 정자는 20억/100㎖이상 정액을 공급한다.
3. 정액은 해당농가가 공급을 요하는 날짜에 공급하겠으며 혼합정액은 공급하지 아니한다.
4. 액상정액을 농가까지 공급할때는 차량소독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농가 액상정액 공급내역을 매월 10일까지 해당 시·군에 제출한다.

2013. . .

○○○ AI센터 대표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4>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시·군>

대상자		사육두수		액상정액 공급량 (팩)	액상정액 공급업체	사 업 비(천원)			
주소	성명	총두수	모돈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서식 5>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구분	대상자 (호)	모돈 두수	액상정액 공급량 (팩)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획							
실 적							
잔 액							

15. 축사(양계, 오리)친환경 에너지효율화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정책	임진우	행)3715 일)220-371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하·동절기시 양계, 오리축사 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단열 및 환기 시스템 설치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6년까지 양계(오리)사 단열·자동환기시스템 누계실적 130호

성과지표	2013 목표치	'12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 양계오리축사단열·자동환기 시스템 설치농가(호)	25	27	2013.1	양계(오리)사 단열·자동환기시스템 설치지원 개소수

4.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사 업 량(호)		27	25	25
사업비	합 계	629	700	700
	도 비	94.4	105	105
	시군비	220.1	245	245
	자부담	314.5	350	35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육계 30,000 수 이상 사육농가

○ 산란계·오리 5,000 수 이상 사육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등록 대상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지원 제외

○ 위 사업대상자 요건의 신청자 미달시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하향 조정하여 추진 (육계 20,000수 이상, 산란계·오리 3,000수 이상 사육농가)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대상 : 건축법에 의거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축사

- 지원순위 ①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축사 ②가설건축물 축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양계, 오리) 단열재 및 자동 환기시스템 보급

- 단열재는 우레탄 및 스티로폼(단, 스티로폼 두께는 50㎜이상)
- 자동 환기시스템(냉난방 기능이 포함된 것도 지원 가능)

5.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호당 28,000천원

- 단열재 : 3.3㎡당 40천원 이하
- 자동 환기시스템 : 660㎡당 6,000천원 이하

○ 단위 사업비에 미달시는 보조·자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단위 사업비 초과시는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7.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25호	700,000	105,000	245,000	350,000

8. 세부 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도

- 사업계획 확정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사업홍보 및 사업신청서 접수
- 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수시 지도·감독 실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 농가

- 사업대상자 참여신청서 제출
- 사업 완료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신청

나. 자금집행과 정산

○ 시군에서는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기성고에 의거 사업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 중간 정산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완료·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9.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가 최고 지원한도액보다 미달되게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군에서는 자체 판단하여 잔여 사업비 내에서 대상자 추가선정 등 조치

○ 당초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후 도에 보고

○ 시장, 군수는 지원시설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사후관리 실시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 식
사업참여 신청서	농가 → 시·군	1. 25	서식 1호
대상자선정 및 보고	시·군 → 도	2. 8	서식 2호
사업추진실적(정산)보고	시·군 → 도	· 매분기 익월10일한 · 사업종료후 20일이내	서식 3호

<별표 1>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배정량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25**	**700,000**	**105,000**	**245,000**	**350,000**	
청주	1	28,000	4,200	9,800	14,000	
충주	5	140,000	21,000	49,000	70,000	
제천	1	28,000	4,200	9,800	14,000	
청원	3	84,000	12,600	29,400	42,000	
보은	2	56,000	8,400	19,600	28,000	
옥천	1	28,000	4,200	9,800	14,000	
영동	1	28,000	4,200	9,800	14,000	
증평	1	28,000	4,200	9,800	14,000	
진천	3	84,000	12,600	29,400	42,000	
괴산	2	56,000	8,400	19,600	28,000	
음성	4	112,000	16,800	39,200	56,000	
단양	1	28,000	4,200	9,800	14,000	

<서식 1>

축사(양계, 오리) 친환경 에너지효율화 신청서

□ 농가현황

성 명		연락처	집) 핸)
주 소			
사업장주소		축사면적	㎡
가축(오리 · 양계) 사육 현황	축종 :	사육수수 :	

□ 신청내역

품 목	신 청 량	소요사업비
단열재	㎡	천원
자동 환기시스템	㎡, 대	천원

상기와 같이 축사(양계, 오리) 친환경 에너지효율화사업에 참여코자 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 · 군수 귀하

<서식 2>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시·군>

연번	대상자		사육 수수	신 청 량		사 업 비(천원)			
	성명	주소		단열재 (처리면적)	자동환기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호		수	㎡	㎡ 대				

<서식 3>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 시·군>

구분	대상자 (호)	사 업 량		자 금 집 행(천원)			
		단열재(㎡)	자동환기 (㎡, 대)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획							
실 적							
잔 액							

16. 양봉 화분사료 공급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정책	임진우	행)3715 일)220-371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이른 봄 양봉화분사료 공급으로 아카시아 개화기이전 강봉군 육성으로 채밀량 증대 및 농가소득 증대

2. 근거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양봉화분사료 지원농가	800	820	792	780	'13.1월	양봉화분사료 지원농가 누계실적

4. 연도별 재정 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량(톤)		400	355	369	200	200
사업비	합 계	1,800	1,600	2,400	1,400	1,400
	도 비	180	160	240	140	140
	시군비	720	640	960	560	560
	자부담	900	800	1,200	700	7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꿀벌 50군 이상 사육농가

○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양봉 협회 회원으로서 상호 협력하여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농가에 우선하여 지원

○ 보조금 정산시 자담분 미부담 등 허위정산 농가는 향후 5년간 사업대상 제외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꿀벌사육농가에 양봉화분사료 공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꿀벌 조춘용 화분사료 구입비 지원

5.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군당 5kg

○ 단위 사업비에 미달시는 보조·자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단위 사업비 초과시는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7.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 비 (10%)	시군비 (40%)	자 담 (50%)
200톤	1,400,000	140,000	560,000	700,000

8. 세부 추진요령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세부 추진요령

1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 사업신청(농가) → 대상자 선정 →

양봉화분 구입(농가) →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완료 정산

○ 도
- 사업계획 확정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사업홍보 및 사업신청서 접수
- 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육군수 확인은 양봉협회 시군분회의 협조를 받아 사업량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적정 제품이 공급되도록 수시 지도·감독 실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 **양봉협회 시군분회**
-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 농가의 사육군수 확인 요청시 적극 협조

○ **농 가**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 시군 및 양봉협회 시군분회에서 사육군수 확인 요청시 적극 협조
- 대상자 확정시 양봉화분사료 구입
- 제품 구입 완료 후 구입증빙 서류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2 세부요령

○ 지원대상자 및 화분제품 선정 요령
- 시군별로 (사)양봉협회 시군분회와 협의하여 "화분사료 공급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자 및 공급제품을 선정하여 공동구매 공급(지원 우선순위 등 적용)

- 수입 화분일 경우 국립식물검역소 등 검역기관에서 검사합격후 통관된 제품을 공급

※ 꿀벌 노제마 등 질병 방역차원에서 방사선 처리된 화분 제품을 권장

○ 화분 적정 공급시기 : 이른 봄 꿀벌 육성을 위해 조기공급(1~2월)

○ 화분공급가격이 지원단가 이하로 가격결정시 인하된 가격으로 보조비율을 적용하고 사업비한도내에서 사업량 조정가능

3 자금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사업비를 중간 정산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의 실적과 관련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완료·정산 보고를 하여야 함

Ⅲ.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가 아카시아 꿀 채밀전에 강봉군을 육성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상자선정 추진

- 사업계획시달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도 '13년 1월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대상자 선정시 보조금 지급 가능(전년 이월분 지급사례가 없도록 확인철저)

○ 화분공급은 이른봄 봉군강세로 아카시아 채밀량 증대를 위한 것으로 늦어도 5월말 이전 까지는 공급토록 지도

- 시장·군수는 1/4분기 중 화분공급 여부를 지도점검
- 사업량 과다배정으로 배정량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아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봉군수를 현지 실사하여 적정배정 조치 (과다배정 농가는 미배정 농가에 전배토록 조치)

○ 부업농은 지원제외(단, 잔여물량 발생시 지원가능)

○ 통계 허위보고자는 지원제외('12년 12월 기준)

- 월동 폐사봉군은 '12.12월 가축통계 군수에서 제외시키고 배정

○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장·군수는 대상자변경 조치 후 도에 보고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 식
① 사업참여 신청서	농가 → 시·군	1. 25	서식 1호
② 대상자선정 및 보고	시·군 → 도	2. 8	서식 2호
③ 사업추진실적(정산)보고	시·군 → 도	매분기 익월 10일한 사업 종료후 20일이내	서식 3호

<별표 1>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kg,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200,000**	**1,400,000**	**140,000**	**560,000**	**700,000**	
청주시	15,900	111,300	11,130	44,520	55,650	
충주시	29,500	206,500	20,650	82,600	103,250	
제천시	11,300	79,100	7,910	31,640	39,550	
청원군	44,700	312,900	31,290	125,160	156,450	
보은군	22,400	156,800	15,680	62,720	78,400	
옥천군	15,900	111,300	11,130	44,520	55,650	
영동군	10,100	70,700	7,070	28,280	35,350	
증평군	5,500	38,500	3,850	15,400	19,250	
진천군	11,900	83,300	8,330	33,320	41,650	
괴산군	12,400	86,800	8,680	34,720	43,400	
음성군	15,600	109,200	10,920	43,680	54,600	
단양군	4,800	33,600	3,360	13,440	16,800	

<서식 1>

양봉 화분사료 공급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성별	남, 여	연락처	
주 소					
□ 양봉사육현황					
사육군수		사육형태	이동 □ 고정 □		
□ 사업신청 내용					
사업량 (kg)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 비 (10%)	시군비 (40%)	자 담 (50%)

※ 성별영향 평가대상 사업으로 신청서에 남·여를 반드시 구분하여 선택

2013. . .

신청자 : (인)

□ 사육군수 확인

사업자 기재군수	읍면동 담당자 및 양봉협회 분회 확인결과	확 인 자
군	군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대 상 자				선 정 결 과				
주 소	성 명	성별 (남,여)	사육 군수 (군)	사업량 (kg)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서식 3>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 시·군>

구분	대상자 (호)	사 업 량 (kg)	자 금 집 행(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획						
실 적						
잔 액						

17. 꿀벌 벌집(벌통, 소초광 등)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정책	임진우	행)3715 일)220-371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꿀벌 벌집(소초광) 공급으로 소비 재사용을 방지하여 질병 전파 사전 방지

○ 낭충봉아부패병 발생 및 잦은 일기 불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의 사육여건 안정화 필요

2. 근거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5년까지 꿀벌 벌집(벌통, 소초광) 지원 150,000군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벌집(벌통, 소초광)지원농가	35,000	-	30,000	35,000	'13.1월	꿀벌 벌집(벌통,소초광) 지원농가 실적

4. 연도별 재정 투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량(천군)		30	35	35	35	35
사업비	합 계	600	700	700	700	700
	도 비	120	70	70	70	70
	시군비	240	280	280	280	280
	자부담	240	350	350	350	35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도내 꿀벌(토종벌, 서양벌) 사육농가

- 서양벌의 경우엔 50군이상 사육농가에 지원
- 단, 사업 신청량이 미달될 경우 서양벌 50군 미만도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순위 : ① 토종벌 사육농가 ② 서양벌 사육농가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꿀벌사육농가에 벌통, 받침대, 소초광 등 공급

○ 사업량 배정 : 대상자 선정시 토종벌 사육농가 우선 배정

- 단, 토종벌 사육농가의 사업신청이 없을 경우 서양벌 농가에 배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벌통, 받침대, 소초광 등 구입비 지원

5.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20,000원/군

※ 단, 토봉농가에서 개량벌통 구입시 50,000원/군

○ 호당 지원 한도액 : 4,000천원

○ 단위 사업비 미달시 보조·자담 비율에 의거 정산,
단위 사업비 초과시는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7.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100%)	도비(10%)	시군비(40%)	자담(50%)
35,000군	700,000	70,000	280,000	350,000

8. 세부 추진요령

가. 사업주관 : 시장 · 군수

나. 세부 추진요령

1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 사업신청(농가) → 대상자 선정 →
꿀벌 벌집구입(농가) →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완료 정산

○ 도
- 사업계획 확정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 · 군**
- 사업홍보 및 사업신청서 접수
- 사육군수 확인은 양봉협회 시군분회의 협조를 받아 사업량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적정 제품이 공급되도록 수시 지도 · 감독 실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 · 정산

○ **양봉협회 시군분회**
-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 농가의 사육군수 확인 요청시 적극 협조

○ **농 가**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 시군 및 양봉협회 시군분회에서 사육군수 확인 요청시 적극 협조
- 대상자 확정시 벌집(벌통, 소초광, 받침대 등) 구입
- 제품 구입 완료 후 구입증빙 서류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2 세부요령

○ 지원대상자 및 제품 선정 요령
- 시군별로 (사)양봉협회 및 토봉협회 분회와 협의하여 "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지원대상자 및 공급제품을 선정하여 공동구매 공급(지원 우선순위 등 적용) 추진 권장

○ 벌집공급시기 : 농가경영 안정을 위하여 조기공급(5월까지)

○ 벌집공급가격이 지원단가 이하로 가격결정시 인하된 가격으로 보조비율을 적용하고 사업비 한도내에서 사업량 조정가능

3 자금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사업비를 중간 정산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의 실적과 관련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완료·정산 보고를 하여야 함

Ⅲ. 행정사항

○ 농가경영 안정을 위하여 조속히 대상자 선정 추진

- 사업계획시달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도 '13년 1월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대상자 선정시 보조금 지급 가능

○ 벌집(벌통, 소초광 등)공급은 농가 경영안정 차원에서 5월말 이전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사업량 과다배정으로 배정량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아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봉군수를 현지 실사하여 적정배정 조치 (과다배정 농가는 미배정 농가에 전배토록 조치)

○ 통계 허위보고자는 지원제외('12년 12월 기준)

- 월동 폐사봉군은 '12.12월 가축통계 군수에서 제외시키고 배정

○ 대상자 사업 포기시 시장·군수는 대상자변경 조치 후 도에 보고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 식
① 사업참여 신청서	농가 → 시·군	1. 25	서식 1호
② 대상자선정 및 보고	시·군 → 도	2. 8	서식 2호
③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시·군 → 도	매분기 익월10일한 사업 종료후 20일이내	서식 3호

<별표 1>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군,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35,000**	**700,000**	**70,000**	**280,000**	**350,000**	
청주시	2,630	52,600	5,260	21,040	26,300	
충주시	4,450	89,000	8,900	35,600	44,500	
제천시	2,070	41,400	4,140	16,560	20,700	
청원군	7,460	149,200	14,920	59,680	74,600	
보은군	3,830	76,600	7,660	30,640	38,300	
옥천군	2,820	56,400	5,640	22,560	28,200	
영동군	1,920	38,400	3,840	15,360	19,200	
증평군	1,330	26,600	2,660	10,640	13,300	
진천군	2,210	44,200	4,420	17,680	22,100	
괴산군	2,320	46,400	4,640	18,560	23,200	
음성군	2,800	56,000	5,600	22,400	28,000	
단양군	1,160	23,200	2,320	9,280	11,600	

<서식 1>

꿀벌 벌집(벌통, 소초광 등) 공급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성별	남, 여	연락처	
주 소					
☐ 꿀벌사육현황(토종벌, 서양벌)					
사육군수		사육형태		이동 ☐ 고정 ☐	

☐ 사업신청 내용

구분	사업량 (개)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 비 (10%)	시군비 (40%)	자 담 (50%)
계						
벌통						
소초광						
받침대						
-						

※ 성별영향 평가대상 사업으로 신청서에 남·여를 반드시 구분하여 선택

2013. . .

신청자 : (인)

☐ 사육군수 확인

사업자 기재군수	읍면동 담당자 및 양봉협회 분회 확인결과	확 인 자
군	군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대 상 자					선 정 결 과						
주 소	성명	성별(남여)	사육군수		사업량(개)			사 업 비(천원)			
			토봉	서양	벌통	소초광	받침대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 품목 추가시 사업량란에 별도칸 삽입하여 작성

<서식 3>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 시·군>

구분	대상자(호)	사 업 량(개)			자 금 집 행(천원)			
		벌통	소초광	받침대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획								
실 적								
잔 액								

18. 가축재해보험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정책	임진우	행)3715 일)220-371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각종사고(수해·풍해·설해·화재 등 자연재해) 및 질병(법정 전염병 제외)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여 경영안전망 구축

2. 근거법령

○ 2012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및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4년까지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율을 60%까지 제고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가축보험 가입률	56.5	52.1	54.1	55.2	매년말	(보험가입두수/보험가입 대상 가축두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438,394	66,196	71,470	
보 조	216,490	33,098	35,735	
자부담	221,904	33,098	35,735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입대상 : 재해보험 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가(소, 돼지, 말, 사슴·양·토끼, 가금, 벌, 축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등록 대상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지원 제외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다만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보험가입시 폭염특약 가입 적극 권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납입하는 보험료 일부지원

5. 지원비율

○ 도비 5%, 시군비 20%, 국고 50%, 자담기타 25%

- 호당 사업단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보조비율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호당 4,000천원(도비 200, 시군비 800, 국고 2,000, 자담 1,000)

- 호당 사업 단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보조비율 적용)

7.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비 (5%)	시군비 (20%)	국고 (50%)	자담 및 기타 (25%)
300호	1,200,000	60,000	240,000	600,000	300,000

※ 사업량(호)은 시군별 배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 조정

8. 세부 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협조기관 : 농협 충북지역본부, 지역축협

○ 사업시행자 :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LIG컨소시엄 등

○ 사업시행은 농림사업시행지침 농어업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사업요령에 의거 시행

○ 가입대상 : 가축(소, 말, 돼지, 사슴, 가금, 벌), 축사 등

○ 가입금액 및 지급기준 : 시세 범위내 농가 자율가입하고 지급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사고로 인한 폐사시 시가의 80~100%까지 지급

※ 가입대상 세부 축종 및 가입형태 : <별표 1>

○ 납입주기 : 일시납

나.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 사업신청(농가) → 대상자 선정 →

가축재해보험가입(농가) →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완료 정산

○ 도

- 사업계획 확정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교부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 가축재해보험 요령에 의거 취급기관에 가입신청 예정 농가를 선정단, 필요시 시·군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음
-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 보조금 지급시 보험증권 및 축협 등 가입처에서 발행한 재해 보험 가입 내역서를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축산업등록제 가입 여부는 자체 확인

-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예산확보 조치

○ 농 가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에 가입 희망시 시군에 사업 신청서 제출
-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보조금 및 자담분 포함하여 우선 가입하고 보조금(도비, 시군비)에 대하여는 추후정산
- 가축재해보험 가입즉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보험증권 사본)하여 시·군에 보조금 신청
- 농가는 보험사고 발생시 즉시 시군, 가입처에 통보하여 각종 사고시 보험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가입처

- 시·군과 협조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국고 및 지역축협 지원 이외의 금액만 농가로부터 받아 보험가입
- 가축재해보험 가입 내역서를 농가에 발급하여 기 납부한 자부담액 중 보조금(도비, 시군비) 지원분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다. 자금집행과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보조금은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농가당 지원액 초과시 초과분은 자담으로 추진

○ 시장·군수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사업비를 중간 정산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완료·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Ⅲ.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수시로 배정된 사업비를 점검하여 보조금이 초과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지도점검 실시

○ 시군 자체사업 및 지역축협과 중복되는 경우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 시행

○ 시장·군수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가입희망농가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각종 사고시 가입처에 신고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당초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 후 도 및 축협에 보고(통보)

○ 사업계획시달 이전 가입분에 대하여도 '13년 1월 이후 가입농가에 대하여는 대상자 선정시 보조금 지급 가능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 식
① 사업참여 신청서	농가 → 시·군	1. 25	서식 1호
② 대상자선정 및 보고	시·군 → 도	2. 8	서식 2호
③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시·군 → 도	· 매분기익월10일한 · 사업 종료후 20일 이내	서식 3호
④ 가축재해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발급	가입처→ 시군·농가	· 가입즉시	서식 4호

<별표 1>

○ 보험가입대상 및 가입형태

구 분	소			돼 지	말	가 금	기타가축	축 사
	Ⅰ(송아지)	Ⅱ(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2~12개월 미만	한(육)우 12개월 ~13세미만 (젖소는 8세미만)	종모우	제한 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닭, 오리, 꿩,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양 토끼,벌 오소리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대상연령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 축종별 보장내용(시가의 80%~100%까지 지급)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가입대상
소	한우 육우 젖소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 (풍·수해·설해등자연재해,화재)등으로 인한 폐사 ◦부상(사지·경추골절,탈골),난산,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송아지 : 생후 2개월 이상 -한육우:12월 ~13세미만 -젖소 : 8세미만
	종모우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 인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정액생산용 씨수소
돼지		◦ 주계약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제한없음
		◦ 질병위험보장특약 - 질병(TGE, PED, ROTA)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 축산휴지위험보장특약 - 풍·수해, 설해, 화재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100%까지 보상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말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할 손해 및 불임 판정된 경우 ◦ 씨수말 번식첫해 선천성 불임 손해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단,경주마는 가입금액의 70%까지 보상	-외국산 경주마는 제외
가금		◦ 주계약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제한없음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기타가축 (사슴양 토끼·벌·오소리)		◦ 주계약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사슴·양·토끼: 생후2개월이상
		◦ 사망·긴급도축 확장보장특약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 (풍·수해·설해등자연재해,화재)등으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경추골절,탈골),난산,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축사		◦ 화재, 풍수해, 설해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보상	

*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의 가축재해보험 상품을 정리한 것으로 민영보험사의 보험상품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별표 2>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호, 천원)

구 분	사업량	예 산 액				
		계	도 비	시군비	국고	자담기타
계	**300**	**1,200,000**	**60,000**	**240,000**	**600,000**	**300,000**
청주시	6	24,000	1,200	4,800	12,000	6,000
충주시	35	140,000	7,000	28,000	70,000	35,000
제천시	19	76,000	3,800	15,200	38,000	19,000
청원군	77	308,000	15,400	61,600	154,000	77,000
보은군	30	120,000	6,000	24,000	60,000	30,000
옥천군	20	80,000	4,000	16,000	40,000	20,000
영동군	18	72,000	3,600	14,400	36,000	18,000
증평군	6	24,000	1,200	4,800	12,000	6,000
진천군	30	120,000	6,000	24,000	60,000	30,000
괴산군	23	92,000	4,600	18,400	46,000	23,000
음성군	26	104,000	5,200	20,800	52,000	26,000
단양군	10	40,000	2,000	8,000	20,000	10,000

<서식 1>

가축재해보험사업 참여 신청서

□ 신청자 현황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

□ 가축재해보험 신청 내용

구 분	가축								축사	비고
	소			돼지	말	사슴·양·토끼	가금	벌		
	송아지	큰소	종모우							
사육두수									-	
가입두수									-	
축　　사	-	-	-	-	-	-	-		동 ㎡	

위와 같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참여코자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단위 : 호, 두, 동, 천원)

대 상 자						사 업 비				
주소	성명	축종	신청내역			계	도 비	시군비	국고	자담 및 기타
			가입 두수	축사						
				동	m^2					

<서식 3>

사업 추진실적(정산) 보고

(단위 : 호, 두, 동, 천원)

가입대상	대 상 자				자 금 집 행(천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호수	가입 두수	호수	가입 두수	계	도비	시군비	국고	자담기타	계	도비	시군비	국고	자담기타
계														
송아지														
한육우														
젖 소														
돼 지														
가 금														
말														
사 슴														
양														
벌														
축 사														

<서식 4>

가축재해보험 가입내역 확인서(가입처 발행)

□ 대 상 자

○ 주 소 :

○ 성 명 :

□ 가축재해보험 가입내역

(단위 : 호, 두, 동, 천원)

가 입 내 역		사 업 비(천원)				
가입축종	가입두수	계	도 비	시군비	국고	자담기타
계						
송아지						
큰소						
종모우						
돼 지						
말						
사 슴						
양						
토 끼						
가 금						
벌						
축 사						

상기와 같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었기 확인 합니다.

2013. . .

○ ○ ○ ○조합(보험사) (직인)

19.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정책	임진우	행)3715 일)220-3715

1. 목 적

○ 축사 노후화에 따른 전기누전으로 화재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피해방지 대책이 필요

○ 사전 안전진단 실시로 재산피해 방지 및 농가 안전의식 고취

2.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시군 지사)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누전차단기, 개폐기 간선확인 및 용량 적정 여부, 동작상태 및 과열여부, 옥내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절연 상태 등 점검

3. 지원자격 및 우선순위

○ 신청자격 : 축산업 등록농가(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는 신청 가능)

※ 계약전력이 75kw이상 농가는 제외(전기사업법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관리함)

○ 우선순위 : ① 축사 및 전기설비의 노후로 안전진단이 긴급히 필요한 농가
② 최근 3년내에 전기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농가
③ 상기 우선순위 이외의 농가로 시군에서 판단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5.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담 및 기타 20%

※ 기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부담분임(공사 사정에 따라 최고 20% 부담)

6.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호)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및 기타
300	30,000	7,200	16,800	6,000

※ 지원한도액 : 호당 100천원 이내
- 사업비가 지원한도액 이하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7. 세부 추진요령

1 추진체계

○ **도**
- 사업계획서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도 → 시·군, 전기안전공사)
- 사업비 배정 및 교부(도 → 시·군)

○ **시·군**
- 사업홍보 및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책임하에 대상자 선정 보고(시·군 → 도)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에 의거 전기안전진단 의뢰(시·군 → 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점검 순회일정에 따른 농가 안내 등 업무협조
- 전기안전진단 완료 결과보고 서류 확인 및 사업비 정산
- 전기안전공사의 보조금 청구에 의거 지정계좌에 입금

○ **전기안전공사**
- 사업대상자 통보(도 → 전기안전공사), 지역별 순회일정 수립 및 통보(전기안전공사 → 시·군)
- 전기안전진단 실시(시·군 지역별) → 진단결과 및 보조금 청구서류 제출(공사 → 시·군)

- 지역별 점검기관

지사별	소재지	관할 시군	전화번호
충북지역본부	청주	청주, 청원, 보은, 증평, 진천, 괴산	210-4500
충주음성지사	충주	충주, 음성	850-2100
제천단양지사	제천	제천, 단양	646-4557
영동옥천지사	영동	옥천, 영동	742-0903

○ **농가**

- 점검일정에 맞춰 점검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
- 농장 관리자는 공사 직원의 소독 여부 확인 후 작업 개시
- 전기안전진단 실시 후 농장소독 실시

2 자금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을 준수하고, 사업비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에 철저

○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8. 행정사항

○ 당초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장·군수는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후 도와 점검기관에 보고

○ 농가의 사업신청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기안전에 취약한 농가를 읍면을 통해 조사하여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 요망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 식
① 사업참여 신청서	농가 → 시·군	1. 25	서식 1호
② 대상자선정 및 보고	시·군 → 도	2. 8	서식 2호
③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시·군 → 도	· 매분기익월 10일한 · 사업종료후 20일이내	서식 3호

<별표 1>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및 기타	
계	**300**	**30,000**	**7,200**	**16,800**	**6,000**	
청주시	5	500	120	280	100	
충주시	54	5,400	1,296	3,024	1,080	
제천시	23	2,300	552	1,288	460	
청원군	46	4,600	1,104	2,576	920	
보은군	26	2,600	624	1,456	520	
옥천군	21	2,100	504	1,176	420	
영동군	16	1,600	384	896	320	
증평군	7	700	168	392	140	
진천군	24	2,400	576	1,344	480	
괴산군	25	2,500	600	1,400	500	
음성군	40	4,000	960	2,240	800	
단양군	13	1,300	312	728	260	

<서식 1>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 사업 신청서

□ 신청인

○ 주　　소 :

- 축사소재지 :

○ 성　　명 :

○ 전화번호 : 집)　　(핸드폰)

□ 기본 현황

축 종	두수	축산업등록 여부	계약전력(kw)	전기점검 실시년도

□ 축사 현황

축사형태	건축년도	동수	면적(㎡)
보은덮개(　　) 철골구조비닐지붕(　　) 샌드위치판넬구조(　　) 기타(　　)			

위와 같이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사업에 참여코자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시장 · 군수 귀하

<서식 2>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사업대상자		가축		축사			사업비(천원)				연락처 (휴대폰)
주 소	성명	축종	두수	동수	면적 (m^2)	계약 전력 (kw)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및 기타	
계											

※ 사업대상자 연락처는 필히 기재

<서식 3>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사업대상자		사업량		사업비 집행(천원)							
				계 획				실 적			
주 소	성명	동수	면적 (m^2)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및기타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및기타
계											

20. 한우고급육 경진대회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정책	유호현	행)3711 일)220-3711

1. 목 적

○ 한우 고급육경진으로 개량의욕 고취 및 농가 사기진작

○ 쇠고기 품질고급화로 FTA 등 쇠고기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급육 경진대회 개최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행사개요

○ 일　　시 : 2013. 4~5월중(잠정)

○ 장　　소 : 농협중앙회 음성축산물공판장

○ 출 품 축 : 36두(시군별 3두)

○ 주　　최 : 충청북도

○ 주　　관 : 농협충북지역본부

○ 협　　조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중앙회 음성축산물공판장
사)한국종축개량협회,

○ 행사내용 :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 입선축 사진전시

○ 시　　상 : 6명(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한우고급육 경진대회(홀수년도)와 한우품평회(짝수년도)를 격년제로 시행

4. 세부추진요령

1 출품대상

구 분	출품대상	실격대상
• 혈통등록 여부	▪ 등록	▪ 미등록
• 거세 여부	▪ 거세	▪ 비거세
• 체중	▪ 공판장 출하(도착)체중 550kg 이상	▪ 공판장 출하(도착)체중 550kg 미만
• 질병 여부	▪ 질병 없음	▪ 질병 발생축

2 출 품

○ 도축, 심사 및 경매가 용이하게 도체번호 부여 의뢰

○ 출품장소 : 농협중앙회 음성축산물공판장(잠정)

○ 출품축 수송 : 출품자 책임하에 수송(시·군단위 공동수송)

3 심사 및 출품축 판매

○ 심 사 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

○ 심사내용

- 등급판정결과에 따른 최종등급별 배점표(별첨 1)
- 육질등급판정 항목별 점수 배점표(별첨 2)
- 육량지수 및 판정항목에 의한 점수 조정표(별첨 3)
- 결함에 따른 점수 배점표(별첨 4)

○ 입상자 결정 : 심사결과 종합 점수에 의거 순위결정

○ 출품축 처리 : 등급판정 및 심사 후 서울공판장 경매에 의한 판매

5. 행정사항

○ 출품축 선발 및 사진촬영 보고(시·군→농협지역본부)

- 출품축 사진촬영 보고 : 3장(출품축+농가, 농가, 출품축)

○ 출품축 출하 지도(시·군→농가)

○ 출품축 등심부위 육질사진 촬영전시(종축개량협회)

-- 세부 추진계획은 행사 1개월전 별도 시행 --

<별표 1>

등급판정결과에 따른 최종등급별 배점표

소도체 등급	기 본 배 점	비 고
1^{++}A	960	• 등급별 점수차 40점
1^{++}B	920	
1^{++}C	880	
1^{+}A	840	
1^{+}B	800	
1 A	760	
1^{+}C	720	
1 B	680	
2 A	640	
1 C	600	
2 B	560	
2 C	520	
3 A	480	
3 B	440	
3 C	400	
D	360	

<별표 2>

육질등급판정 항목별 점수 배점표

육질 등급	근내지방도		육 색		지 방 색		조 직 감		성 숙 도	
	번호	점수	번호	점수	번호	점수	번호	점수	번호	점수
1^{++}	9^{++}	+20								
	9^{+}	+15	**1**	-10	**1**	2	**1°**	5	**1**	**평가항목**
	9°	+10	**2**	-5	**2**	2	$\mathbf{1^{+}}$	2	**2**	**에서**
	8^{++}	+5	**3**	0	**3**	0	$\mathbf{1^{++}}$	0	**3**	**제외**
	8^{+}	+2	**4**	3	**4**	-1	**2°**	-2	**4**	(거세우의
	8	0	**5**	0	**5**	-2	$\mathbf{2^{+}}$	-4	**5**	경우
1^{+}	7^{++}	+20	**6**	-5	**6**	-3	$\mathbf{2^{++}}$	-6	**6**	성숙도로
	7^{+}	+15	**7**	-10	**7**	-10	**3°**	-8	**7**	인한
	7°	+10					$\mathbf{3^{+}}$	-10	**8**	감점요인없
	6^{++}	+5					$\mathbf{3^{++}}$	-12	**9**	음)
	6^{+}	+2								
	6°	0								
1	5^{++}	+20								
	5^{+}	+15								
	5°	+10								
	4^{++}	+5								
	4^{+}	+2								
	4°	0								
2	3^{++}	+20								
	3^{+}	+15								
	3°	+10								
	2^{++}	+5								
	2^{+}	+2								
	2°	0								
3	1^{++}	+5								
	1^{+}	+2								
	1°	0								

<별표 3>

육량지수 및 판정항목에 의한 점수 배점표

육량등급	육량지수		도체중		배최장근	
	범위	점수	중량(kg)	점수	단면적(㎠)	점수
A 등급	74.00 이상	+5	500 이상	0	110 이상	+5
	73.00 ~ 74.00	+4	480 ~ 500	0	105 ~ 110	+4
	72.00 ~ 73.00	+3	460 ~ 480	0	100 ~ 105	+3
	70.50 ~ 72.00	+2	440 ~ 460	0	95 ~ 100	+2
	69.00 ~ 70.50	+1	420 ~ 440	0	90 ~ 95	+1
	67.50 ~ 69.00	0	400 ~ 420	0	85 ~ 90	0
B등급	66.00 ~ 67.50	+4	380 ~ 400	-1	80 ~ 85	-1
	65.00 ~ 66.00	+3	360 ~ 380	-2	80미만	-2
	64.00 ~ 65.00	+2	340 ~ 360	-3		
	63.00 ~ 64.00	+1	320 ~ 340	-4		
	62.00 ~ 63.00	0	320 미만	-5		
C 등급	61.00 ~ 62.00	+4				
	60.00 ~ 61.00	+3				
	59.00 ~ 60.00	+2				
	58.00 ~ 59.00	+1				
	58.00 미만	0				
기타	육량등급이 상향조정된 도체	0				

<별표 4>

결함에 따른 점수 배점표

근출혈		수 종		근 염		외 상		근육제거		기 타	
심함	약함	심함	약함	심함	약함	심함	약함	심함	약함	심함	약함
-50	-25	-20	-10	-40	-20	-50	-25	-70	-35	-60	-30

<별표 5>

한우고급육경진대회 출품자 명단

시군	주 소	농가명	주민등록 번 호	사육 규모	출품 두수	출하 일령	출하 체중	이표 번호

<별표 6>

사진제출 양식

농가	
출품축	
출품축 + 농가	

21. 학교우유급식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정책	이민영	행)3714 일)220-3714

Ⅰ. 사업개요

1. 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체력증진

○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2. 사업개요

○ 급식 지원기간 : '13. 1. 1 ~ 12. 31

○ 지원대상자 : 28,351명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법정대상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비법정대상자),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등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결식아동, 복지시설수용자

○ 지원조건 : 보조 100%(축발기금 60%, 도비 12%, 시군비 28%)

○ 급 식 일 : 250일(방학중 급식 포함)

○ 지원단가 : 380원/200㎖

○ 급식대상 우유

-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원유 100%)
- 가공유 중 국내산 원유 99.0%이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하고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것

○ 총 사업비 : 2,693백만원(축발기금 1,616, 도비 323, 시군비 754)

Ⅱ. 사업시행요령 : 2013년 농림사업시행지침

Ⅲ. 행정사항

○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 유업체에 대한 대상품목 공급, 급식중단, 품목 변경 등 지도·관리

○ 급식유업체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시 증빙서류 등을 확인후 지급

○ 급식 대상자선정 결과, 급식 실적 및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

○ 분기별 보조금 신청

○ 시군에서는 교육청과 수시협의하여 사업비 한도내에서 급식량을 조정하여 불용액 발생사례가 없도록 사전방지책 강구(사업비 잔액 발생시 사전에 시군 교육청에서 급식대상자 추가선정 조치)

<별첨 1>

시군별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28,351	2,693,323	1,616,000	323,200	754,133	
청주시	10,359	984,083	590,456	118,091	275,546	
충주시	4,200	399,000	239,400	47,880	111,720	
제천시	2,510	238,450	143,070	28,614	66,766	
청원군	2,000	190,000	114,000	22,800	53,200	
보은군	1,100	104,500	62,700	12,540	29,260	
옥천군	1,300	123,500	74,100	14,820	34,580	
영동군	1,170	111,150	66,690	13,338	31,122	
증평군	1,322	125,590	75,354	15,071	35,165	
진천군	1,020	96,900	58,140	11,628	27,132	
괴산군	850	80,750	48,450	9,690	22,610	
음성군	1,660	157,700	94,620	18,924	44,156	
단양군	860	81,700	49,020	9,804	22,876	